

현안분석 2015-06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창희

현안분석 2015-06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창 희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Security

연구자 : 박창희(파견연구관)  
Park, Chung-Hui

2015. 11.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경호·경비체제를 검토하여 국회 경호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함.

### □ 연구의 목적

- 국회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 제안함.
- 3권 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제정 방안을 마련함.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국회 경호·경비 조직 편제
  - 국회 질서유지제도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문제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경호·경비체제
  - 국내 관련기관 사례
    - 대통령경호실, 법원, 행정부(정부청사).
  - 외국의회 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개선 방안
  -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가칭 「국회경호처법」 및 「국회경호규칙」 제정

## III. 기대효과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경호·질서유지의 실효성 확보함.

○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관계 법규 개정 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함.

▶ 주제어 : 국회법, 국회의사당, 국회경호, 질서유지, 국회경호처법,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국회경호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Defense Ac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 “Ga” national major facility to be always be protected safely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reats.
- A study of a new and unified security system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be eventually enacted which is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Security guards system.

### Purpose

-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be recommended in order to ensure parliamentary order and security improvements.
- Consider to enact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Act to ensure the 3 branches of government and order autonomy of the legislative branch with regard to security matters.
-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ensur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such legislation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aintaining order at the National Assembly.

## II. Content

- The state and problems of the security and security system at the National Assembly
  - The organization of the security system.
  - Maintenance of order
  - The problem of security system.
- Security system in relation to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 Examples of domestic institutions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courts, government
  - Examples of foreign national assemblies
    - Germany, France, Japa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system
  -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guards
  -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 Enact the tentatively called [Security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gulation on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 III. Expected results

-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ensur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such legislation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aintaining order at the National Assembly.
- If regu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is revised, policy and materials of legislation will be provided.

▶ Key Words : National Assembly law,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Maintenance of Order, Security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Security Guards, National Assembly Police,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urity law, Private Police Guards law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5
제 2 절 연구의 목적 .....	16
제 3 절 연구방법 .....	16
제 2 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19
제 1 절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법원(法源) .....	19
1. 헌 법 .....	19
2. 국회법 .....	19
3. 국회사무처법 .....	21
4. 형 법 .....	21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1
6. 통합방위법 .....	22
7. 국회규칙 .....	22
8. 국회규정 및 내규·지침 .....	22
제 2 절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	23
1.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	23
2. 경호·경비 조직의 운영 .....	24
3. 국회경비대 .....	24

제 3 절 국회 질서유지제도 .....	28
1. 질서유지제도 .....	28
2. 내부경찰권 .....	28
3. 국회의가택권 .....	29
4. 경호권 .....	30
5. 질서유지권 .....	32
제 4 절 국회 경호·경비 위해환경 .....	37
1. 집회 및 시위의 증가 .....	37
2. 청사 내 금지물품 반입 증가 .....	38
3. 국회 질서문란행위의 증가 .....	38
4. 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 .....	39
제 5 절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 .....	41
1. 운영적 측면 .....	41
2. 법·제도적 측면 .....	44
제 3 장 국내·외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	47
제 1 절 국내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	47
1. 청와대의 경호·경비체제 .....	47
2. 법원의 경호·경비체제 .....	52
3. 정부종합청사의 경비체제 .....	57
제 2 절 외국 의회의 경호·경비 체제 .....	59
1. 대륙법계 국가의 의회 경호·경비 체제 .....	59
2. 영미법계 국가의 의회 경호·경비체제 .....	73

제 4 장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 개선방안 .....	81
제 1 절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 개선방안 .....	81
1. 국회경비대 개편의 필요성 .....	81
2. 전·의경제도의 변화 방향 .....	82
3. 국회경비대 존속시 지휘권 인수방안 .....	83
4.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대체방안 .....	88
제 2 절 국회 경호 운영효율성 향상 방안 .....	100
1. 출입통제방법의 개선 .....	100
제 3 절 국회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03
1.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 .....	103
2. 「국회법」 및 경호·경비 관계법규 제·개정 .....	110
3.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방안 .....	118
4. 무기휴대 및 사용권의 부여 .....	120
제 5 장 결 론 .....	123
참 고 문 헌 .....	12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국회의사당은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국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열린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의사당의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국내의 여러 이익단체들은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불법점거를 기도하기도 하고 요인위해 행위를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관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격을 통한 상징적 효과가 큰 국회는 테러 표적이 되기 쉽다.

국회의 경호·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호조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경호·경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에 합당한 역량과 위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맞게 국회경호·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법제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 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새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의경제도의 존폐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사당 경내 등 외곽출입문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경호·경비 체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1) 오병일·이주락·김태연, “국회 경호·경비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9(1): 2012, 188면.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호·경비 체제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3권 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 방안과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 외곽경비와 국회의장 근접경호 및 향후 의경제도의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국회경비대의 국회 경호·경비부서로의 지휘·감독권 이양을 통한 국회경호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관계법규의 제·개정 방안 모색과,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제도의 도입과 국회경찰제도의 도입 방안 등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방법

현재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경호·경비 부서 근무자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 근무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한다.<sup>2)</sup>

---

2) 면담참가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표집방법 중 하나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회 경호·경비 체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실무를 경험해 본 국회 경호·경비부서 근무자와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 소속 근무자 및 경찰청 관련부서 담당자와 면담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Interview Guide)를 작성하여 활용한다.<sup>3)</sup>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을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 주요 선진국의 국회 경호·경비 체제와 비교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외국 의회의 경호·경비제도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에서 파견한 해외입법주재관을 통해 입수된 국회내부보고서 및 기존의 국내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해외 연구자료를 새로이 검색하여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연구결과로서의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방안은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방안의 제시보다는 실현가능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국회 경호·경비 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연구문제에 접근하였다.

3) 기존에 논의된 문제점 이외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면담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국회 경호·경비 제도의 새로운 문제점 파악과 이에 따른 제도 개편방안 제시라는 탐색적 성격의 특성상 면담 중 연구자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였던 내용의 발견을 위하여 일반적인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과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와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구주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 2 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제 1 절 국회 경호·경비제도의 법원(法源)<sup>4)</sup>

#### 1. 헌 법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 제1항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해 삼권분립의 이념에 따라 국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내부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국회법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에서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유지의 개념에는 내부경찰권과 국회가택권(의원가택권)<sup>5)</sup>을 포괄하고 있다. 동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항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호권의 법적

---

4) 오병일,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0~37면 참조.

5) 국회가택권(國會家宅權)이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하며, 필요할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한다. 국회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로서 회기 중뿐만 아니라 폐회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태 발생 시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관내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회가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택권은 의사와 관련된 경호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이라고도 한다.

근거가 된다. 동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항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현행범의 체포)에서는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경우 경위 또는 경찰관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에서 회의장 안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 3. 국회의사무처법

「국회의사무처법」 제2조(직무)에서 국회의사무총장은 국회의시설의 관리자로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4. 형 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의회의장모욕)에서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국회 회의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공관의 청사 또는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는 헌법기관인 국회 및 그 하부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함께 국회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 6.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제1항에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6) 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제4항에서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는 근거에 따라 국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 한다.

## 7. 국회규칙

「국회방청규칙」에는 국회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의장 및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경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에서 방청인은 경위의 신체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방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 방청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8. 국회규정 및 내규·지침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에서 국회청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국회청사의 출입절차, 출입증의 발급 등 청사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사무처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6)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제2조.

「국회교통관리규정」은 국회의사당 경내의 교통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참관에관한내규」에 국회참관을 목적으로 하는 내방객에게 국회의사당 및 헌정기념관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보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장출입에관한내규」에 「국회법」 제151조에 규정된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의 범위와 본회의장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청사의 출입절차, 출입증의 발급 등 청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경호업무지침」에서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회의 및 개회식에 따른 국회의원의 경호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호원·안내원 근무지침」은 방호직렬 및 안내직렬 공무원의 근무편성·운영과 근무지별 임무를 부여하여 청사경비·방호와 안내 업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 2 절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 1.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항,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sup>7)</sup>를 둔다는 규정과 2012년 5월 30일 시행된 「국회

7) 경위라 함은 국회사무처소속의 5급내지 9급의 일반직 국회공무원으로서 경호기획관에 소속하여 경호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안병욱, 『최신 국회법』, 서울: 쇼이스디디자인, 2012, 324면).

사무처직제시행규칙」(「국회사무처내규」 제6조의2(경호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을 두고, 다시 경호기획관 밑에 의회경호담당관과 의회방호담당관을 두고 있다.<sup>8)</sup>

## 2. 경호·경비 조직의 운영<sup>9)</sup>

「국회사무처직제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의회경호담당관에게 국회 경호·방호업무의 기본계획의 수립, 본회의 및 위원회의 경호, 국회의사당 참관의 집행에 관한 사항, 국회방청에 관한 사항, 국회청사 출입증 발급·관리업무, 국회경호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맡기고 있다.

제6조의2 제4항은 의회방호담당관에게 방호업무의 계획 수립, 국회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 방문증 교부 및 방문인 안내, 방호종합상황실의 운영, 국회의사당 경내 주차관리, 주차카드 발급·관리,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운용업무를 맡기고 있다.

## 3. 국회경비대

### 1) 국회경비대 연혁

- 1951. 3. 22 국회경비대 창설 (내무부훈령 11107호).
- 1997. 제 105전투경찰대 국회경비대 소속으로 편제.
- 2010. 3. 경비대원을 전경에서 의경으로 전원 교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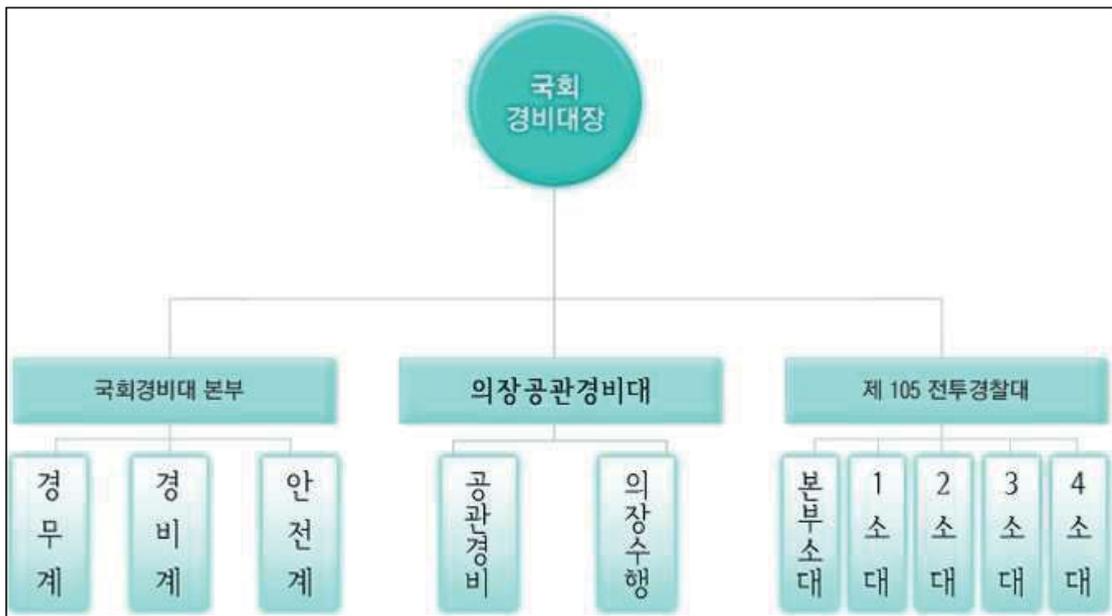
8) 오병일,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7면.

9) 오병일, 위의논문, 39~40면 참조.

2) 국회경비대 편제 및 업무현황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경호와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건물 밖에 이르기까지 국회구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국회경비대<sup>10)</sup>를 두고 있다<sup>11)</sup>.

<그림 1> 국회경비대 조직도



자료: 국회경비대홈페이지, <http://www.smpa.go.kr/nasc/2015.9.11.검색><sup>12)</sup>

국회경비대는 하나의 의경 중대를 4개의 소대로 편제하여 3개 소대는 경비업무에 투입되어 교대근무를 하며, 1개 소대는 5분대기대 및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경비대는 집단 민원시위 및 시설점거농성을 사전 차단하는 일과, 5분 대기대의 신속 출동태세 유지, 불법행위 첩보 입수 시 의회경호담당관 및 의회방호담당관과 협의 후

10)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경찰관(30명) 및 의경(170명)으로 조직 되어 있다.  
 11) 오병일, 위의논문, 40~41면 참조.  
 12) 오병일, 위의논문, 41면 참고.

출입문 봉쇄,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체제 구축 등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sup>13)</sup>

국회경비대 소속 의장공관대에서는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근접경호는 소수의 경찰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국회경비대 업무분장

조직구성	주요업무
국회경비대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 인사 등,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li> <li>■ 국회청사 등 외곽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에 관한 사항</li> <li>■ 불순분자 잠입방지 및 검거 등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li> </ul>
의장공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장 공관경비 및 출입자 통제</li> <li>■ 국회의장 경호</li> </ul>
제105전투 경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 관리</li> <li>■ 외곽경비 불순분자 사전 색출 관리</li> <li>■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및 검문</li> <li>■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질서유지</li> </ul>

자료: 국회경비대 홈페이지(<http://www.smpa.go.kr/nasc/>)참조, 2013.11.20검색.<sup>14)</sup>

### 3) 국회경비대 설치근거 및 관계 법규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비대를 두고, 국회경비대의 지휘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직할대 등 지휘체계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와 제3조(지휘책임 한계)에 의거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비1과장)이 맡고 있다.<sup>15)</sup>

13)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5면.

14) 이강봉, 위의논문, 105면 재인용.

15) 1.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단을 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이 경비·요인경호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근거 국회의장의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sup>16)</sup>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호대상을 “요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호규칙 및 경호편람에서 요인(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를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4) 국회 경호·경비 관계 업무구분도

국회는 3선의 경호·경비 체제를 구축하여 경위가 제1선인 건물 내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방호직원이 제2선인 경내 주요건물의 경비 및 방호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제3선으로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을 담당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국회 3선 경호·경비 체계

구 분	업무범위
의회경호담당관실 (경위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장 질서유지업무</li> <li>■ 참관 및 방청업무</li> <li>■ 의장(儀仗)업무</li> </ul>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직할대등지휘체계에관한규칙」 제 2 조(적용범위) 직할대의 지휘책임한계, 체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지휘책임한계)

구 분	지휘체계
국회경비대	경비부장(경비1과장)은 조직, 훈련 등 운영계획 및 주임무 수행에 대한 보좌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17) 「경찰경호규칙」 제 3 조(경호의 대상) ① 경호의 대상이 되는 국내요인은 다음과 같다.

2.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구 분	업무범위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방호 및 순찰업무</li> <li>■ 방호종합상황실 업무</li> <li>■ 주차관리 업무</li> </ul>
국회경비대 (경찰/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청사 외곽경비, 출입자의 차량통제</li> <li>■ 국회의장공관 경비 및 국회의장경호·불순분자 검거 등</li> </ul>

### 제 3 절 국회 질서유지제도

#### 1. 질서유지제도

국회의 질서유지제도는 국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규범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국회의 자율권 중 내부경찰권과 국회가택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부경찰권과 국회가택권은 「국회법」상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형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 2. 내부경찰권

내부경찰권은 국회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원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내부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는 국회의사당은 물론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헌정기념관(국회방문자센터), 의장공관 등도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8)</sup>

18) 오병일, “한국 국회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7면.

### 3. 국회의가택권<sup>19)</sup>

국회의가택권(國會家宅權)<sup>20)</sup>이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하며, 필요할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한다.

국회의가택권은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로서 회기 중뿐만 아니라 폐회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태 발생 시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관내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회의가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가택권은 의사와 관련된 경호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 3> 국회의가택권

구 분	국회의가택권
근거조문	· 「국회법」 제10조
행사주체	· 국회의장만 행사
행사요건	· 회기 또는 폐회 중 · 국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급박한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경우
행사범위	· 국회 울타리 안 · 국회건물
국가경찰 공무원파견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파견요청

출처 :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20면 재정리.

19)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서울: 대동인쇄소, 2012, 623~624면.

20)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이라고도 한다.

#### 4.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장이 회기 중 의원이나 방청인 및 기타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여러 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아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고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내부경찰권을 의미한다.<sup>21)</sup>

경호권 행사의 시간적 요건으로서, 경호권은 회기 중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회기 중’이란 국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은 물론이고 이외의 시기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때<sup>22)</sup>, 또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sup>23)</sup>를 포함한다.<sup>24)</sup>

경호권 행사의 장소적 요건으로서, 경호권은 국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국회 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와 같이 국회의 의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장이 국회의 의사활동에 직접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사당 건물, 동 건물의 일부, 부지 등 전부를 가리킨다.<sup>25)</sup>

국회경호업무는 회의장 건물 안은 경위가, 회의장 건물 밖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한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

---

21) 이강봉, 앞의논문, 106면.

22) 「국회법」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전문개정 1994.6.28.]

23) 「국회법」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최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최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최한다. <개정 1997.1.13.>

③ 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 등을 심사한다.

④ 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24) 국회사무처, 『국회경호·방호업무편람』, 2012. 6면 참조.

25) 국회사무처, 위의 책. 6~7면 참조.

한 때에 의장은 정부에 대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파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sup>26)</sup> 지금까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경위로 하여금 해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의사를 진행한 경우가 3건이며, 경찰관을 파견 요청하여 안건을 처리한 경우가 2건이었다.<sup>27)</sup>

아래 <표 4>는 국회 개원 이래 경호권 행사 사례이다.

<표 4> 경호권 행사 사례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경호권 발동 경위
제 4 대	29 (임)	'58.8.20 (제36차)	한희석 부의장	· 추가경정예산안 절차와 관련하여 회의장 소란이 계속되자, 경위로 하여금 의원 2인 (김상돈, 안규섭)을 퇴장시킴.
	30 (정)	'58.12.24 (제30차)	한희석 부의장	· 자유당이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의원만으로 언론제한을 골자로 하는 「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이 의사당에서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함. 이에 경호권을 발동하여 무술경관 300명을 동원하여 단상에서 야당의원들을 축출하고 휴게실 등에 5시간 동안 감금하였음.
제 5 대	37 (정)	'60.11.23 (제48차)	곽상훈 의 장	· 3·15 부정선거 핵심인 장경근 피고의 해외도주 사건의 진상추구를 위한 국무총리 출석요구에 관한 건으로 김영수 의원이 의석에서 폭언을 하여 회의장이 소란해져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킴.

26) 김태연,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0면.

27) 이강봉, 앞의 논문, 109면

제 2 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경호권 발동 경위
제 1 0 대	103 (정)	'79.10.4 (제2차)	백두진 의 장	· 김영삼 총재의 징계 안이 제출되자 신민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의 등단을 세 차례 봉쇄함. 이에 경호권을 발동하여 회의장을 본청146호실로 옮겨 여당 단독으로 제명을 의결하였음.
제 1 2 대	131 (정)	'86.10.16 (제8차)	최영철 부의장	·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자, 야당은 회의를 점거하고 의장의 단상 접근을 3차례 저지함. 이에 경호권을 발동(경찰관 요청)하여 본회의장을 참의원회의장으로 옮겨 여당 및 무소속의원 147인 전원 찬성으로 체포동의의 건을 의결.

출처 :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187면.28)

### 5. 질서유지권

국회의 질서유지권이란 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이나 외부인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평온한 상태로 복귀시킬 권한을 의미한다.29)

회의의 질서유지권이란 회의장 내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회의

28) 국회사무처(2012a),의회경호담당관실 내부자료 및 김태연, 앞의 논문, 11면 참조.

29) 김태연, 앞의 논문, 10면. ;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64조, 「형법」 제138조(국회의장모욕 등), 「국회법」 제10조, 제49조 및 제13장 질서와 경호(제143조부터 제154조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국회방청규칙」, 「국회청사관리규정」, 「본회의장출입에관한내규」,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 등이 있다.

의 질서유지권<sup>30)</sup> 으로 볼 수 있다.<sup>31)</sup>

회의의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원 등이 있는 경우에<sup>32)</sup> 그 질서문란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사하며<sup>33)</sup> 의장은 경위로 하여금 명령을 집행한다. 다음 <표 5>는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이다.

<표 5>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질서유지권 발동 경위
제 1 6 대	246 (임)	'04.3.12 (제2차)	박관용 의 장	· 2004. 3. 9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제24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자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산회 후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 시작. 이에 3월 12일 박관용국회의장이 입장을 제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

30) 「국회법」 제145조

31) 이강봉, 앞의 논문, 109면.

32) ①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하는 경우(국회법 제99조), ②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국회법 제102조), ③ 발언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국회법 제104조, 제105조 제1항, 제122조의2 제2항, 제122조의3 제6항),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경우(국회법 제146조), ⑤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국회법 제147조), ⑥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국회법 제148조).

33) 먼저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문란 의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제지함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다음으로 당해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 당일의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7호).

제 2 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질서유지권 발동 경위
제 1 7 대	258 (임)	'06.2.27	이경재 환경노동 위원장	·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심사 시 회의장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70 (임)	'08.1.17	김원웅 통일외교 통상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70 (임)	'08.1.21	김원웅 통일외교 통상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71 (임)	'08.2.13	김원웅 통일외교 통상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제 1 8 대	279 (임)	'08.12.28	박진 외교통상 통일위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질서유지권 발동 경위
				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83 (임)	'09.7.22	김형오 의장		· 2009.7.19 미디어법처리와 관련 국회 내 모든 질서회복과 점거농성의 해제를 촉구하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청사출입을 제한함. 본청의 출입을 의원과 본청 상근 근무자 및 국회출입기자로 한정하고 당일 회의의 방청을 불허.
285 (임)	'09.12.31	심재철 예산결산 특별위 위원장		· '2010년도 예산안'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91 (임)	'10.6.25	안경률 행정안전 위원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 동안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94 (정)	'10.12.8	안경률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 '2011년도 예산안'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294 (정)	'10.12.8	박희태 의장		· '2011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내 모든 질서회복과 점거농성의 해제를 촉구하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청사출입 제한조치를 취함. 본청의 출입을 의원과 본청 상근 근무자 및 국회출입기자로 한정하고 당일 회의의 방청을 불허.

제 2 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대 별	회 별	회 의	의 장	질서유지권 발동 경위
	303 (정)	‘11.10.31	남경필 외교통상 통일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또한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유지활동을 수행함.
	303 (정)	‘11.11.22	남경필 외교통상 통일 위원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방청을 불허했으며,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또한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유지활동을 수행함.
	303 (정)	‘11.11.22	박희태 의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시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 당일 회의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회의를 비공개하였으며, 방청을 불허, 회의장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또한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유지활동을 수행함.

출처 :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188~191면.<sup>34)</sup>

34) 국회사무처(2012a),의회경호담당관실 내부자료 및 김태연, 앞의 논문, 11~14면 참조.

## 제 4 절 국회 경호·경비 위해환경

### 1. 집회 및 시위의 증가

회의장 내외에서의 집회 및 시위 발생현황은 2004년 2건에서 2009년 16건으로 급증하였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 10건으로 과거에 비해 발생건수가 여전히 높아 국회 경호·경비 및 위기 관리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6> 연도별 회의장 내외에서의 집회·시위 현황

(단위: 건)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본회의장	1	-	-	7	4	8	3	1	24
위원회 회의장	1	4	3	1	6	8	-	9	32
계	2	4	3	8	10	16	3	10	56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내부자료 재구성, 2012.

특히, 국회 본관 앞 집회는 국회사무처에서 기단 앞 광장이 조성된 이후 월 2~3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sup>35)</sup>. 초기에는 법률현안에 대하여 의원 및 당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특정 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참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집회방식도 기자회견이나 구호를 외치는 방식에서 현수막 설치 및 피켓 시위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대

35) 2007.11.30. 국회의사당 기단 앞 잔디마당 조성 완료함.

규모집회 형식으로 변질되고 있어 국회 경호·경비에 있어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청사 내 금지물품 반입 증가

청사반입 금지물품의 적발현황은 2005년 230건에서 2011년 1,546건으로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국회 경호·경비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sup>36)</sup>

## 3. 국회 질서문란행위의 증가

연도별 국회 질서문란행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5건에서 2011년 6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국회 경호·경비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국회 질서문란행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청사 내	4	15	19	18	7	17	16	96
청사 외	1	20	31	43	36	45	94	270
계	5	35	50	61	43	62	110	366

자료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내부자료 재구성, 2013.<sup>37)</sup>

국회사무처에서는 ‘열린 국회’를 지향하여 국회를 둘러싼 담장을 허무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sup>38)</sup> 제 이익단체들은 이러한 보안상 약점을

36) 김태연, 앞의 논문, 16면.

37) 김태연, 앞의 논문, 15면 재인용.

38)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담장철거와 관련하여 2010년 한국궐립조사연구소를 통해

악용하여 국회청사 내에 들어와 불법점거기도 및 요인 위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sup>39)</sup>

적법한 절차로 청사 내에 들어온 후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청사 내에서 소동 및 질서위반행위를 야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등 국회는 외부의 위해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다.<sup>40)</sup>

#### 4. 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sup>41)</sup>과 연평도 포격사건<sup>42)</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파병등과 관련하여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 상대의 테러행위나

---

일반 국민과 국회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국회의사당의 개방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의 36.9%가 ‘현재 개방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5.1%가 ‘현재 수준보다 더 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회의원은 64.1%가 ‘현재 개방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4.6%가 ‘더 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직원들은 83.3%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4.1%만이 더 개방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과는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국회담장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0, 13면.)

39) ① 2009. 2월 국회 경내에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가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 ② 2010. 1. 31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박○○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국회의관 남문으로 진입하여 국기계양대 앞에 주차한 후 국회본관 2층 현관기단 위로 뛰어 올라가 손도끼로 자신의 왼손에 자해를 한 사건, ③ 2010. 10. 27 한미FTA졸속 비준저지위원회 소속 목회자 11명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하여 들어와서 민주당원내대표실에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고 2차례 면담 후에도 퇴청하지 않아 익일 12:50 강제 퇴거된 사건, ④ 2010. 11. 5 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농어업희생연구모임·농민단체, 농민 비상시국 대토론회 참석자가 회의를 마치고 안내실로 나오다가 근무자를 밀치고 백여 명이 의원실 복도로 무단진입 후 구호외치며 건의서 전달한 사건 등이 있다.

40) 오병일, 앞의 논문, 2면.

41) 2011.3.26.발생.

42) 2010.11.23.발생.

테러위협<sup>43)</sup>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44)</sup> 특히, 국회는 보안관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격을 통한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sup>45)</sup> 아래 <표 8>은 중동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이다.

<표 8> 중동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해사례(2003~2012년)

시 기	피해 사례
2012.2.10	·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성지순례단 29명 등 31명을 태운 버스가 플링켈 계곡을 지나던 중 한국인 3명(순례단 2명, 가이드 1명)과 이집트인 1명 등 총 4명이 베두인족에게 납치됨.
2010.1.25	·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연쇄 차량폭탄테러가 발생.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과 450m·900m 거리에서 터진 2·3차 폭탄테러로 인해 대사관 유리창이 완파되고 에어컨 등의 기물이 손상되었으나 방폭필름이 설치되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음.
2009.6.15	· 예멘에서 국제의료봉사단체(World Wide Service) 소속 한국인 1명이 독일인 의사가족 및 영국인 기술자 등과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산책을 나간 후 실종. 6. 12 독일 간호사 2명과 함께 총격을 받아 피살된 채로 발견됨.
2009.3.15	· 예멘 고대 유적지 시밤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한국인 관광객 박봉간, 김인혜, 주용철, 신혜윤씨 사망.
2008.1.14	· 아프간 카불에서 우리 국민이 투숙 중이던 ‘세레나’ 호텔에 탈레반 조직원 3명이 침입하여 자폭테러·수류탄·

43) 알카에다는 테러를 목적으로 한국 내 잠입을 시도하고, ‘몬타나’라는 아랍어 웹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14일 이내로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한국 내 중요 시설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으며, ‘서울 자체 내에 그들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그러한 경고의 진위 여부에 관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결국 우려했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테러범에 관한 경고들이 국내에서 끊이지 않았다.

44) 김태연, 앞의 논문, 17면.

45) 김태연, 위의 논문, 17면 참조.

시 기	피해 사례
	AK47 등으로 공격하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모면.
2007.2.27.	· 아프카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서 자살 폭탄테러 발생, 기지 밖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 사망.
2004.5.31.	·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물건배달을 위해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트럭을 이용해 이동하다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에 피랍. 김선일씨는 이후 6월 22일 팔루자 인근 도로에서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됨.
2003.11.30.	· 이라크 티크리트 고속도로서 오무전기 직원들이 차량 이동 중 피격. 김만수, 곽경해씨 사망.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www.tiic.go.kr), 언론보도 재정리.

## 제 5 절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

### 1. 운영적 측면

#### 1) 경호·경비 지휘체계의 이원화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3선의 경호·경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경호기획관실과 서울지방경찰청소속의 국회경비대로 이원화되어 있다.<sup>46)</sup>

국회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직할대로서 총경급인 국회경비대장을 두어 국회에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발생시에 경위와 방호직원은 경호기획관의 지시를 받지만, 국회경비대는 문서에 의한

46) 국회 경위는 제1선인 건물 안 회의장을, 방호원이 제2선인 경내 주요건물을, 국회경비대가 제3선인 국회 경내 각 출입문을 담당하고 있다.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경호·경비 조직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sup>47)</sup>과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sup>48)</sup>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호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일한 지휘자의 명령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sup>49)</sup> 특히, 국회 경호·경비 업무에서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sup>50)</sup>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고, 요인암살 및 테러와 같이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불란한 명령하달 및 이에 대한 경호·경비요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sup>51)</sup>

## 2) 국회의장 수행경호의 문제점

국제적인 테러의 급증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정치지도자 등 사회주요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하고, 테러수법이 날로 흉포화·지능화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

47)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은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청된다.

48)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란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9) 이강봉, 앞의논문, 85면. ; 김태연, 앞의 논문, 105면.

50) 회의장 점거농성 및 물리적 충돌 등으로 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사례가 있으며, 국회청사 내 및 본회의장에 이익단체 관계자, 이해관계인 등이 무단으로 출입하려 하거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 회의장에 무단으로 난입하거나 흥기로 자해하려는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51) 김태연, 위의 논문, 106면 참조.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장 경호는 국가 의전 서열이 보다 낮은 국무총리와 비교하더라도 경호팀의 인원이나 경호팀장의 직급 면에서 국회의장의 중요성에 합당한 경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전 서열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9>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수행경호 비교

국회의장 경호	국무총리 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호팀 총 6명</li> <li>- 경호 : 경찰 4명 (팀장: 경위)</li> <li>- 운전 : 국회사무처 소속 운전직렬 공무원 2명(선도/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호차량 2대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호팀 총 10명</li> <li>- 경호/운전 : 경찰이 전담(팀장: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호차량 2대 운영</li> </ul> </li> </ul>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이 전담 경호를 하고 있어 전문 운전요원과 협동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국회의장 경호는 경찰관이 하고 경호운전은 국회사무처 관리국 소속 운전직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들 운전직공무원은 외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경호운전에 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동경호에 대한 우발상황 발생 시의 위기대처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수행경호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국회의장과 관련된 정보유출 및 동선 파악이 가능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2. 법·제도적 측면

### 1) 국회(입법부)경호·경비의 자율권 침해

국회는 「헌법」 제64조 제1항 및 「국회법」 제166조에 의거하여 의사 진행과 내부규율에 관하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 구성 원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상호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경호·경비를 위해 행정부에 소속된 경찰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2) 관련 법규의 미비

경호·경비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경호·경비활동이 국회 내규인 「국회경호업무지침」 및 「방호원·안내원근무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가칭 「국회경호처법」과 같은 국회 경호 및 경비에 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규정이 없다.

경위는 국회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업무를 총괄하고 국회의장의 명을 수행하는 국회 내 법집행관이라 할수 있지만 사법경찰권을 가지지 못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의장 등 요인에 대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호·경비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사시 요인경호 및 테러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3) 경호·경비 집행조직의 위상문제

우리 국회에서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실력으로 제지하여야 하는 국회 경호업무의 책임자의 직위가 현재 국장급(경호기획관)으로 그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 제 3 장 국내·외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 제 1 절 국내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 1. 청와대의 경호·경비체제

##### 1) 법적 근거

대통령 경호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으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동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제4차 개정 때에는 그 명칭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경호실의 임무 범위<sup>52)</sup>는 동법 제4조(경호대상)와 같다.

##### 2) 대통령경호실 현황

「정부조직법」<sup>53)</sup> 제16조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고 하였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sup>54)</sup>에

52) 제 4 조(경호대상)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전문개정 2011.4.28.]

53) 제16조(대통령경호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4) 제 3 조(대통령경호실장 등) ①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sup>55)</sup>

<표 10> 대통령경호실 하부조직의 기능

하부조직	기능
기획관리실	국회·예산 등 대외업무와 인사·조직·정원관리 업무 총무와 재정 등 행정지원 업무
경호본부	대통령 행사 수행 및 선발 경호활동 방한하는 외국정상, 행정수반 등 요인에 대한 경호
경비본부	청와대와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총괄 청와대 내·외곽을 담당하는 군·경 경호부대 지휘
안전본부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행사장 안전대책 강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호안전교육원	경호경비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경호경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출처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http://www.pss.go.kr/>(2015.9.5.검색)재구성<sup>56)</sup>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③ 차장은 정무직·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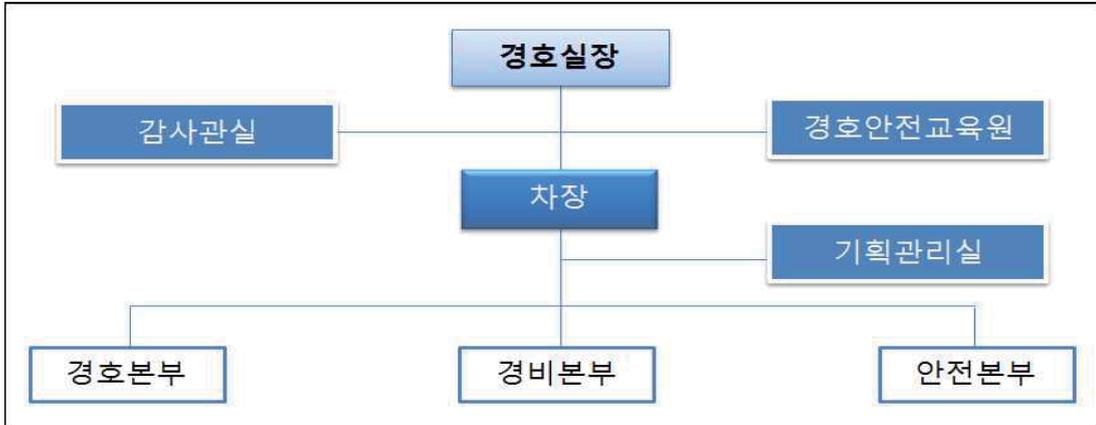
55)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11호, 2015.1.6., 일부개정.

제 6 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56) 김태연,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

<그림 2> 대통령경호실 조직도



자료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http://www.pss.go.kr/>(2015.9.5.검색)재구성

### 3) 경호 운용

경호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경호구역 안에서의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sup>57)</sup>

경호실장은 또한,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up>58)</sup>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9면 재인용.

57)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2015, 20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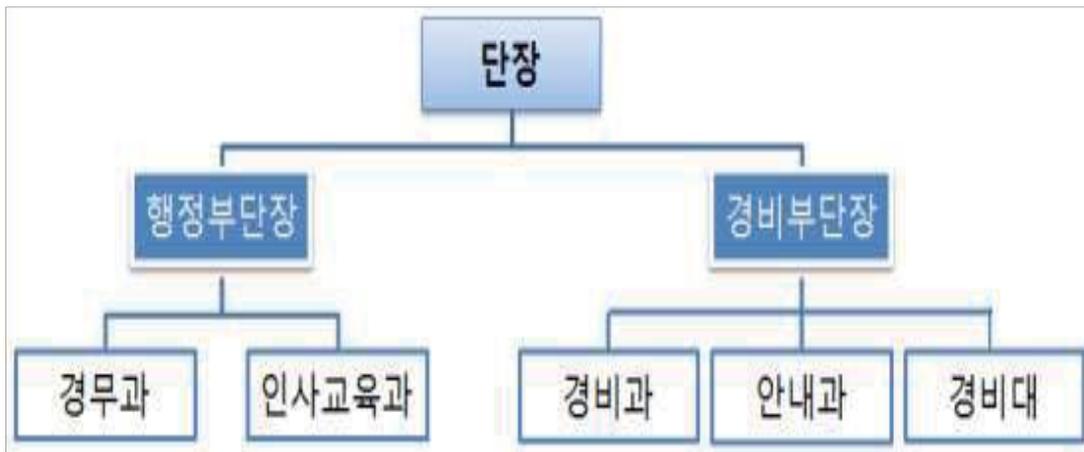
58)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2011, 515면. 김태연, 위의논문 18면 재인용.

경호실의 경호는 3선 경호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1선인 대통령 근접 경호는 경호공무원이 담당하고, 제2선인 울타리와 경계벽 주변은 경찰이 담당하며, 제3선인 울타리 외곽은 군과 경찰이 분담하고 있다.<sup>59)</sup>

4)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단

101경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할대로 청와대 내곽경비, 인원 및 차량의 청와대 출입통제, 유사시를 대비한 도보타격대 운용 및 기타 경호실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101경비단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그림 3> 101경비단 조직도



자료 : 경찰청 경비국 내부자료 재정리, 2012.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할대인 22경찰경호대는 행사장 내 경호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동향관찰, 연도경호, 대민통제 업무, 금속탐지기 운용 및 경호실의 지시사항 등을 처리한다.<sup>60)</sup>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와 202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관리관이 지휘감독하고, 다시

59) 이강봉, 앞의 논문, 63면.

60) 「경호실경호업무규정」 제21조 2항.

경찰관리관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 파견된 ‘소속공무원’에 해당하여 경호실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sup>61)</sup>

101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9조에 의해 경호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02경비단의 경우, 동 규칙 제19조 2에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경호실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의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sup>62)</sup> 동법 제15조(국가기관 등 대한 협조요청)<sup>63)</sup>에 의한 일종의 경호지원부대로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경호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sup>64)</sup> 따라서 101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업무수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65)</sup>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sup>66)</sup>에 규정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

6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 2 절 직할대

제19조(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

1.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의 사무분장은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2.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지휘·감독한다.**

제19조의2(202경비단) 202경비단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6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②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3)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이강봉, 앞의논문, 63면.

65) 이강봉, 위의논문, 64면.

66)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 5 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

전조치보다 더욱 폭넓은 경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67)</sup>

## 2. 법원의 경호·경비체제

법원의 경비체제는 크게 나누어 법원경위, 보안경비직(前 방호원), 청원경찰과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sup>68)</su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직군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현 법원경위, 보안경비직, 보안직, 청원경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더 이상 신규 채용하지 아니하고 별정직 9급상당의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법원보안관리대를 중심으로 법원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6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의해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제3조(불심검문)과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근거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8)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 1) 법원경위·보안경비직·청원경찰

### (1) 법원경위<sup>69)</sup>

법원경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원조직법 제64조에 의해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경위를 두고, 법원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정질서 유지 및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보안경비직

보안경비직은 방호원”의 명칭을 “경비관리원(장)”으로 변경<sup>70)</sup> 이후 경비관리원(장)을 보안경비직 공무원<sup>71)</sup>으로 변경하였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원의 청사방호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에는 청사출입문 통제, 청사출입 인원에 대한 검색, 민원 및 내방객 안내 업무, 청사 내 질서유지, 도난 및 화재예방감시시스템 확인, 청사 내 방범활동, 기 타 지시된 임무수행 등이 포함된다.

### (3)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을 근거로 하는 청원경찰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 해당시설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제도

---

69)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70)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0.10.4] [대법원규칙 제2303호, 2010.10.4, 일부개정]

71)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2.7] [대법원규칙 제2518호, 2014.2.7, 일부개정]

로서, 법원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청사 내 경비와 청사외곽 초소경비를 담당하고 법정보안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청원경찰은 청사 출입문 통제·청사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색·청사 내과, 외곽 경비초소 근무,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법정경비의 지원, 민원 및 내방객 안내, 교통의 단속과 주차질서 유지, 요인경호, 법관·법원 공무원·당사자 및 증인 신변보호, 기타 지시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 2) 법원보안관리대<sup>72)</sup>

### (1) 법적 근거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sup>73)</sup> 제5편 (법원직원) 제55조의2 제①항에서 법정의 존엄과

---

72) 제 5 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73) 「법원조직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6호, 2014.12.30., 일부개정]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sup>74)</sup>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조 직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설치하며, 관리대원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등으로 구성한다<sup>75)</sup>.

법원보안관리대원은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법원보안관리대 창설 및 청사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청사보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였고, 태스크포스팀 연구결과 범정의 안전을 포함한 법원청사의 방호 및 보안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과 각종 물리적 시스템의 보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12월 23일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다.<sup>76)</sup>

2006년 1월 2일부로 전국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창설하게 되었다.<sup>77)</sup> 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2015년 현재 약 8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

74)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12.30.] [대법원규칙 제2579호, 2014.12.30., 타법개정]

75) 최민규, “대한민국 법원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7면.

76) 이강봉, 앞의 논문, 65면.

77) 개정안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덧붙여, 기본 인력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청사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을 통합하여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라는 명칭의 조직을 두며 이들로 하여금 법원청사 내에서의 급박한 위해행위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림 4> 법원행정처 조직도



자료 :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2015.9.14.검색)

### (3) 임 무

법원보안관리대의 주요 임무는 크게 법정보안과 청사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 55조의2에 의하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하고,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를 집행하며, 법정 내 증인, 방청객 및 법원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기타 법정질서와 보안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청사외곽 및 내부 출입자에 대한 신체검색 및 통제, 법원 내 모든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법원 구내에서의 질서유지 관련 업무 등 법정을 포함한 청사 내·외부의 보안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3. 정부종합청사의 경비체제<sup>78)</sup>

#### 1) 법적 근거

「정부청사관리규정」제3조 제2항 제1호에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 이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78) 방호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한 인력채용방식으로 특수경비용역(특수경비원)을 시행하게 되었음. 2015년 현재 정부 세종청사 등 타 기관의 경우에도 특수경비용역의 운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종청사에 방호직공무원 77명, 특수경비원 약 535명(안내원56명 포함), 기타 정부청사에 검색전문 특수경비원 50여명 운영 중에 있음.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6장 제47조에서는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중앙청사 및 지방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6장 제34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으로 하여금 정부중앙청사의 방호·방화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조직 및 임무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6장 제48조에서는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소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호요원의 주요임무는 ① 청사 내의 질서유지, ② 방범·방화·주차 및 시설관리, ③ 민원인 안내 등 다양한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청사관리소에 파견되어 있는 정부중앙청사경비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경계 및 방호, 대테러 침투 대비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내부는 청원경찰, 외곽경비와 총리공관 경비 및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 제 2 절 외국 의회의 경호 · 경비 체제

### 1. 대륙법계 국가의 의회 경호 · 경비 체제

#### 1) 독 일<sup>79)</sup>

독일 의회의 경우 의장 산하에 사무총장이 있고, 그 아래에 총무과와 청사 경호 ·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과가 있다. 편제는 연방경찰, 의회경찰(경위)<sup>80)</sup>, 방호원 및 보조원<sup>81)</sup>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방경찰은 외곽 울타리와 청사 밖 경호를 담당하고 의회경찰은 청사 내부와 회의장 경호를 담당한다.<sup>82)</sup>

79) 오병일, 앞의 논문, 38~42면 참조.

80) 의회공무원으로서 인원은 연방경찰과 의회경찰을 포함하여 약150여명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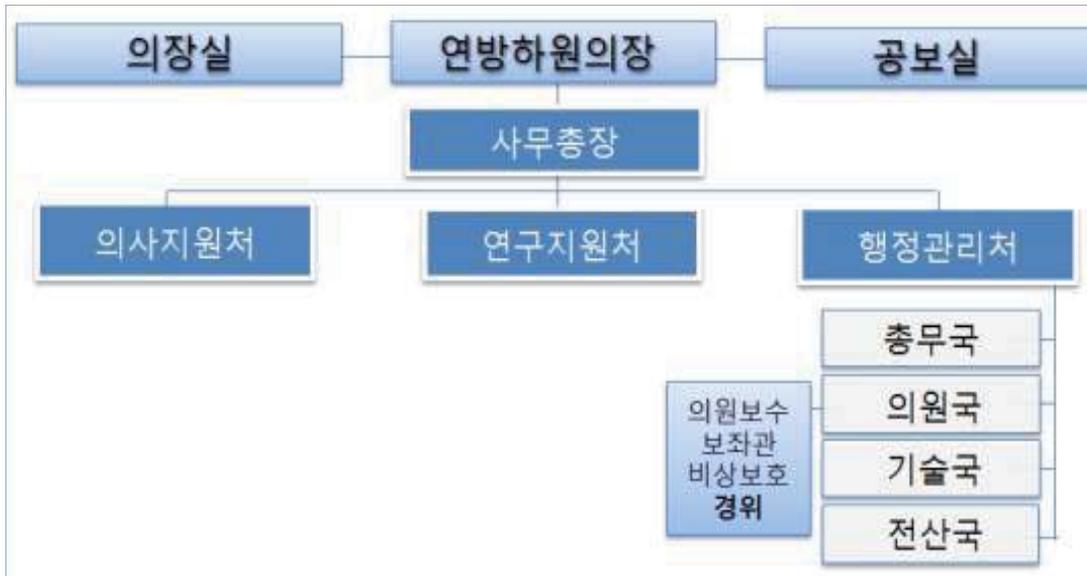
81) 방호원과 보조원은 의회경찰의 지시를 받으며 방문인 관리와 안내 업무를 담당함, 인원은 약 250여명 임.

82) 독일연방공화국헌법 제40조 제2항은 “의장은 연방의회 건물 내에 있는 가택권(Hausrecht)과 경찰권(Polizeigewalt)을 행사한다. 연방의회 건물 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여하한 수색 또는 압수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 의사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 연방의회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 건물의 일부 및 토지 내에 있어서는 가택권과 경찰권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장경찰권은 의장(議場)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원내외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며 이를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연방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2항은 “독일연방 의회의 질서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또한 경찰집행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직접강제법 제6조에 의하면 연방경찰공무원법 제1조에 규정된 연방의 경찰집행공무원은 직접강제법에 있어서의 “연방집행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 의장의 질서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접강제법이 규정하는 직접강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연방의회 의장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본<1949-1999>까지 통일이전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의 수도, 현재는 베를린이 수도임)주의 관할경찰행정청에 경찰관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서독기본법 제35조 “연방의 모든 관청은 상호 사법공조 및 직무공조를 행한다”는 규정과 같이 관할경찰행정청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되는 경찰관은 역시 의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다(국회운영연구회, “의장권한에 관한연구”, 연구논집 제8집, 1972, 13-14면, 27면, 오병일, 앞의 논문, 39면 재인용).

독일 「기본법」<sup>83)</sup>은 독일의회의 질서유지가 의장의 임무에 속하며,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권과 의사당 건물에 대한 가택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sup>84)</sup>. 사무총장 산하의 행정관리처는 인사, 예산, 행정관리업무 등 행정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총무국, 의원보수 및 보좌관 등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의원국, 건물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국, 컴퓨터 및 전산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국으로 총 4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sup>85)</sup>

<그림 5> 독일 연방하원 사무처 조직도



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경호·방호업무편람』, 2012, 54면 재구성.

8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어: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이다. 1949년 당시 서독에 의해 제정되어 동독과 통일하기 전까지의 임시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Grundgeset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 통일한 이후에도 ‘헌법’으로 바꾸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4년 12월 23일(BGBl. I S. 2438)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 헌법이라고 한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기초하였다는 의미에서 ‘본 기본법’이라고도 한다. 한편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줄여서 ‘독일기본법’이라고 한다(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 2015.10.26.검색).

84) 「기본법」 제40조, 「하원의사규칙」 제7조제2항.

85) 오병일, 앞의 논문, 40면.

행정관리처 산하의 의원국에 속해 있는 의회경찰은 일반경찰 중 자원으로 의장의 지시 하에 청사 및 회의장을 경호하는 경위임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 중에는 국회에 소속된다.

연방 하원 의장은 회의 중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의제 외의 발언을 하는 의원에게 토론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욕설이나 소란을 통해 타인의 발언 또는 토론진행에 지장을 주는 의원에 대하여는 질서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하원의사규칙」제38조에서는 회의장의 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의원에 대하여는 퇴장 및 최고 30일까지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규칙 제41조에서는 의장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도 퇴장시킬 수 있으며, 「기본법」제40조 2항에 의해 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Hausrecht)과 경찰권(Polizeigewalt)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 구내에서는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 또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독일 하원의사규칙 중 질서유지 관련 규정】**

**제 7 조 의장의 임무**

- ① 의장은 연방의회를 대표하고 연방하원의 의사를 총괄한다. 의장은 연방의회의 품위와 권리를 유지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사를 주재하고,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의장은 연방하원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건물, 부속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택권과 경호권을 갖는다.

**제36조 의제복귀 및 질서유지 경고**

의장은 안전에서 이탈하는 발언자에게 의제로 복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의장은 질서를 위반한 연방하원의원에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호명할 수 있다.

질서유지의 경고와 그에 관한 경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 제37조 발언의 중지

발언자가 발언 중에 의제복귀로 3회, 질서유지에 3회 경고를 받고, 두 번째로 3회에 걸쳐 의제복귀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지적을 당하였을 때 의장은 그에게 발언을 중지시켜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해 다시 발언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38조 연방하원의원의 출석정지

①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경고가 없이도 중대한 질서침해를 이유로 의원을 회의 중에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은 관련의원이 회의의 종결까지 며칠간 출석정지 되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연방하원의원은 30일까지 출석정지 당할 수 있다.

② 출석정지당한 의원은 지체 없이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그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해당의원은 그로인해 출석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의장으로부터 통보받는다.

③ 출석정지당한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에는 위원회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 출석정지당한 의원이 연방하원 또는 위원회 회의에 위법적으로 참석하려고 시도할 때, 제2항이 준용된다.

⑤ 출석정지당한 의원은 휴가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당의원은 출석부에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 제39조 질서유지 경고 또는 출석정지에 대한 이의

관계의원은 질서유지의 경고 또는 출석정지에 대해 다음 회의일까지 서면으로 이유를 첨부한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는 회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이의에 대해 토론없이 의결한다. 이의는 유예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40조 회의의 중지

연방하원에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한 소란이 발생했을 때, 의장은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할 수 있다. 의장은 경청할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을 때 의장석을 떠난다. 의장은 이후 다음 회의를 소집한다.

### 제41조 기타 질서유지 조치

① 연방하원의원이 아닌 회의참석자와 방청인은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복종한다.

② 방청석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질서와 품위를 해치는 사람은 의장의 명령으로 즉시 퇴장당할 수 있다. 의장은 심한 소란을 이유로 방청석을 비우게 할 수 있다.

자료 : 전진영,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35~36면.

## 2) 프랑스<sup>86)</sup>

프랑스의 국회경호<sup>87)</sup> 조직체계는 사무총장 산하에 일반행정국이 있고 일반행정국 아래 영접 및 경호과가 있는데, 동 부서에서 영접, 경호, 회의장 질서유지 및 보안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하원의 사무처는 입법사무처와 행정사무처로 이원화되어 있다.

입법사무처는 국회 의장단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국회운영 및 회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사무처는 재무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행정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하원의 행정사무처는 정원의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이 안내, 방호, 경호 및 시설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sup>88)</sup>

프랑스 의회의 경우 경호권은 법률명령(제58-1100호 제3조) 및 의사규칙<sup>89)</sup>과 의장단일반지침<sup>90)</sup>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의회의 경비 및 경호는 공화국 수비대, 의회경비요원 및 경찰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86) 프랑스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서 참조, 2009.

87) 프랑스 국회는 평시에는 경위와 경찰에 의해 국회질서가 유지되며 의장의 명령과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시에는 의장의 판단 하에 군대 규모를 결정하여 의장의 지휘 하에 두게 할 수 있고, 공화국 군대에서 파견되어 육군대령을 지휘관으로 하며 파견된 군대는 의원(議院)의 이름으로 의장이 상시 복무할 인원을 결정하고 감독한다.

88) 오병일, 앞의 논문, 42면.

89) 하원의사규칙 제13조 제2항, 상원의사규칙 제90조,91조.

90) 하원의장단 일반지침 제1조의 B, 상원의장단 일반지침 제1조제3항.

공화국수비대는 의회 외에도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을 비롯하여 총리 관저·주요 정부부처기관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사당 건물 내부 및 구내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sup>91)</sup>.

동 수비대는 의회 내에 상시주둔하며 24시간 계속 의사당 내부경비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장내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투입될 수 있다. 동 수비대는 의사당의 경비 외에도 의장의 본회의장 등청 시 의전행사, 국민의 의회방문 시 의전행사도 담당하고 있다.

본회의장내 경비 및 경호업무는 본회의국 경위부서에 배속된 소수의 경위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군대의 투입을 명령할 수 있다.

경비요원(방호원)들은 하원의 경우, 재정담당 사무총장실 산하의 안내, 안전, 치안과에서 안내 및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sup>92)</sup>, 상원의 경우에는 재무관위원실 소속하에 있는 경비과에서 안내 및 경비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93)</sup>.

의사당 외부경비는 원칙적으로 관할지역 경찰서에 배속된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중시위 등 의사당 외부의 안전에 위협사태가 예견될 경우에는 통상 관할 경찰서장이 자발적으로 경찰력을 보강배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국가안전경찰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원 및 상원의장에 대한 수행경호도 경찰에서 파견된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의 지속적인 경호수행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위하여 3인의 경찰이 상하원에 각각 파견되어 있다.

91) 하원의 경우 47인이 파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상원의 경우 약 50-60인 근무하고 있음(매일 약간 명씩 변동).

92) 총 100인이 근무하고 있음. 또한 이와는 별도로 64인이 교대근무를 통하여 24시간 내내 CCTV를 관리하고 있음.

93) 상원의사당 및 부속건물에 대한 출입통제관리, 우편물관리 및 CCTV 관리담당(77인). 공공안내서비스(2개의 안내실) 및 상원내 통행관리 및 통제(164인), 상원이 관리하는 룩상부르그공원 관리 및 경비(34인) 등으로 구분됨.

「의회운영에 관한 법률명령」(제58-1100호)제3조 양원의 의장들은 소속 원의 내·외 안전을 감시할 책임을 가진다. 관련 조항은 각 원에 배속된 건물 외에 모든 명분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도 준용된다.

양원의 의장들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병력 및 모든 관계자를 징용할(requérir) 수 있다. 이 요구는 모든 군장성·공무원에게 직접 할 수 있고, 이 요구는 받은 자가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

양원의 의장들은 징용권(droit de réquisition)을 재무관(questeurs) 또는 재무관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원의사규칙」제13조 제2항에는 의장은 하원의사당 내·외의 안전을 감시할 책임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의장은 필요한 군병력의 규모를 정하고 지휘한다.

「상원의사규칙」제90조에는 의장은 상원의사당 내·외의 안전을 감시할 책임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의장은 필요한 군병력의 규모를 정하고 지휘한다. 의장은 상원의 경호권을 행사한다. 동 규칙 제9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의장이 정기적으로 발급하는 출입증(cartes) 소지자 및 재직 직원 외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회의장을 일체 출입하지 못한다.
2. 일반 방청인은 탈모(脫帽)하고 방청석에 착석하여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이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는 경위관들이 즉시 퇴장시킨다.
4. 토론을 방해하는 모든 이는 경우에 따라 바로 관계당국에 소환한다.

<그림 6> 프랑스 하원 사무처 조직도



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경호·방호업무편람』, 2012, 51면 재구성.

의회 경호 담당 조직은 경찰, 헌병, 경위 및 방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무장관의 명령을 받는 경찰과 국방장관의 명령 하의 헌병은 외곽 울타리와 청사 밖을 맡고 있고, 경위는 회의장 출입자 통제, 의전행사 참여, 감시카메라 통제 등을 담당하며, 방호원은 청사출입구에서 출입자를 검색한다.

하원의 의장은 내부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sup>94)</sup> 의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불가피할 경우 그에 상당한 명령과 지시를 하여 평상시엔 의회경위와 경찰이, 비상시에는 파견된 군대가 의장의 지휘 하에 이를 수행한다.<sup>95)</sup>

의원은 기본적으로 원내의 질서유지를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의사당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 폭언 등을 행한 의원에 대하여 속기록에 기록하는 등의 주의 환기 및 세비 삭감 등의 단순징계와 동료의원을 폭행하거나 단순 징계에 불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도를 고려

94) 하원의사규칙 제52조.

95) 하원의사규칙 제16조.

하여 의장이 행하는 임시 직권 정지 또는 검찰고발 등과 같은 중징계가 있다.<sup>96)</sup>

**【프랑스 하원 의사규칙 중 질서유지 관련 규정】**

**제13조**

1. 의장은 본회의, 의장단 회의, 의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의장은 의회 내·외부의 질서에 책임을 진다.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해 의장은 경비대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비대는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2조**

1. 의장은 회의를 개회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2.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경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제54조**

1.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발언권을 갖고 있던 의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의원에게 발언권을 양보할 경우에도 의장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회의가 5분이상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2.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은 발언 순서를 정한다.
3. 의장은 각 정당소속 의원 1인에게 5분동안 투표설명을 하도록 한다
4. 의원은 본인 의석 또는 발언대에서 발언한다. 의장은 의원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의장은 충분한 발언을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발언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시간보다 초과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의원은 의제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야 한다. 의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장은 주의를 줄 수 있다. 의원이 주의에 따르지 않거나, 발언중지 명령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발언을 금지시킬

96) 오병일, 앞의 논문, 44면.

수 있다. 의장은 그 이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제58조**

1. 의사진행 및 회의와 직접 관련있는 발언은 의제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의제에 관하여 발언하는 도중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토론은 중지되고, 요청한 의원에게 발언권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다른 의원이 발언중인 경우에는 해당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권이 주어진다.
2. 의사진행 발언이 회의와 직접 관련된 발언이 아니거나 이미 가결된 안건을 반복할 의도로 밝혀지면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발언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
6. 다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무질서한 행동은 금지된다.

**제70조**

의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 의
- 회의록에 기재되는 주의
- 견 책
- 일시적 등원정지를 수반하는 견책

**제71조**

1. 의장은 주의를 줄 수 있는 단독권한을 갖는다.
2. 발언 중인 의원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주의를 받게 된다.
3. 발언권을 받지 않은 의원이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의원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주의를 받은 의원이 동일 회의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된다.
5. 의원을 모욕·선동, 또는 위협한 의원은 주의를 받고, 또한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된다.
6. 주의의 징계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은 1개월 동안 의원수당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제72조**

1. 의원은 다음 경우에 견책을 받는다.

- (1) 주의가 회의록에 기록된 후, 의장을 모욕한 경우
- (2) 의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

**제73조**

- 1. 의원은 다음 경우에 견책을 받고 일정기간 의사당 내 등원이 금지된다.
  - (1) 견책을 목살하거나 두 번 견책당한 경우
  - (2) 공개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3) 의회나 의장을 모욕한 경우
  - (4) 대통령, 수상, 정부각료, 또는 의원,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를 모욕, 선동, 또는 위협한 경우
- 6. 견책 및 임시 등원정지를 받은 의원은 15일 동안 원내에서의 직무수행 및 의사당 내 등원이 금지된다.
- 7. 등원이 금지된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면 의장은 퇴장명령을 하고, 이에 불복하면 회의는 중지된다. 만약 2회의 견책 및 임시 등원정지를 받은 의원이라면 의사당 내 등원이 30일 금지된다.

**제74조**

- 1.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의장의 제의에 따라 의장단 회의 (Council of the President)에서 해당의원을 견책 및 임시 등원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2. 의원에 대한 견책 및 임시 등원정지의 징계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의장은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해당의원의 변명을 듣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의장은 의장단회의의 결정사항을 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해당의원은 경위에 의해 인도되어 의사당 정문에서 밖으로 내보내진다.

**제75조**

- 1. 견책 및 임시 등원정지는 의장의 제의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 2. 의원이 징계조치를 받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동료의원을 통해 언제든지 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76조**

- 1.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의원은 1개월 동안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2. 견책과 임시 등원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은 자동적으로 2개월 동안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 제77조

1. 의원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및 투표를 방해하고, 동료의원에게 공격을 가하여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의장의 의사진행절차를 따르라는 명령을 거부), 의장은 의회를 산회하고 의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2. 의장단은 해당의원을 견책하고 임시 등원정지의 징계를 본회의에 제안하고,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동안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3. 만일 징계를 심사하는 본회의에서 심각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이를 즉시 검찰총장에게 제소한다.

#### 제77조의 1

1. 의원투표권의 개인적 속성의 관점에서 비추어 투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동안 의원수당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같은 회기동안 다시 위반하는 의원은 6개월동안 감액된다.
2. 서기의원(Secretaries)의 징계제안에 대해 의장단(Bureau)이 징계를 결정한다

#### 제78조

1. 본회의 개의기간에 의사당 내부에서 의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진행 중인 심의는 일시 중지된다.
2.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그 위법사실을 통지한다.
3. 1항의 행위로 회의가 중지되거나 혹은 산회되었을 경우에, 의장은 회의속개시간 및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해당의원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의장의 명령에 의하여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거나 의사당 내에 구류된다.
5. 의원이 저항하거나 의회에서 소란이 있을 경우, 의장은 즉각 본회의를 산회한다.
6. 의장단은 즉시 의사당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검찰총장에게 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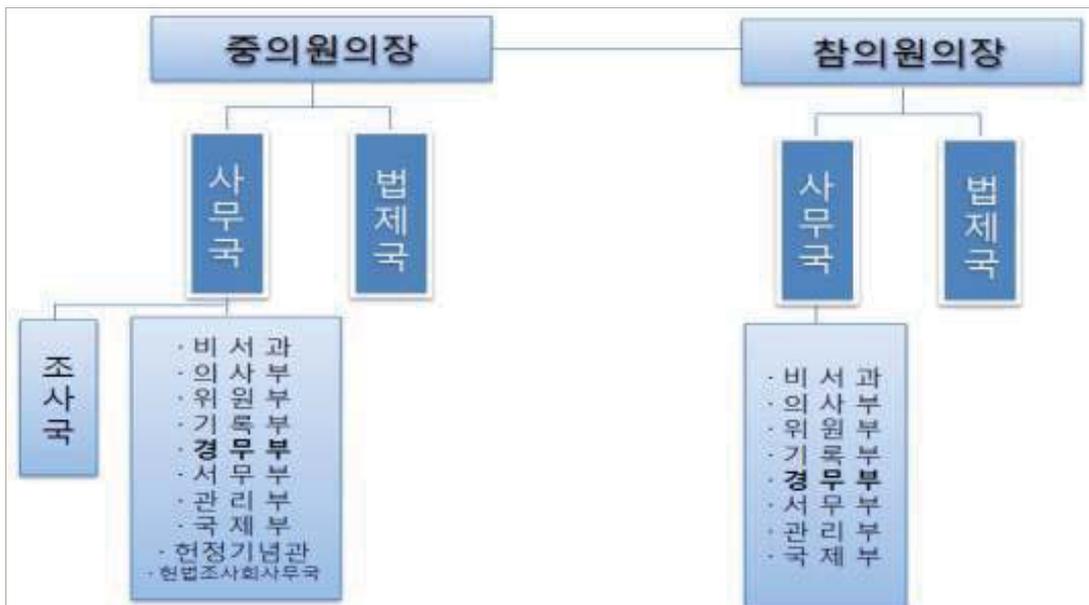
자료 : 전진영.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32~34면.

3) 일 본<sup>97)</sup>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인데, 회기 중 각원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내부경찰권을 행함. 각원의 사무총장 밑에 경무부장을 두고 그 아래에 부부장, 과장, 계장, 평직원이 있으며 국회 경호업무 및 의원회관에서의 건물관리권에 기초한 경호·경비 업무는 경위<sup>98)</sup>가 수행하고 있다.<sup>99)</sup>

우리 국회와 달리 일본은 경위가 국회건물 내부 뿐 만아니라 국회 구역까지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100)</sup>

<그림 7> 일본 중의원·참의원 사무처 조직도



자료 : 일본 입법주재관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9.

97) 일본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서 참조, 2009.

98) 경위의 직급은 경위실장(부부장 보직), 경위부장(과장 보직 및 평부장), 경위반장(계장 보직 및 평반장), 경위로 4개의 계급으로 보수 및 승진제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우월하며 중의원 282명, 참의원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9) 오병일, 앞의 논문, 58면.

100) 김태연, 앞의 논문, 23면.

아래의 <표 11>은 일본 국회경호 조직 운영개요이다.

<표 11> 일본 국회경호 조직 운영개요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총장 직속으로 경무부를 설치하고 경무부장 아래 4개 과 운영 · 양원 합계 492명의 위시(경위)</li> </ul>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직급으로 이루어진 일반직 공채 공무원</li> </ul>
업 무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시(경위) - 회의장 · 건물 및 외곽구역 담당</li> <li>※ 회기 중 외곽경비를 위하여 매 회기 초에 중 · 참의원 의장 명의로 정부(경시청)에 경찰관 파견요청</li> </ul>

자료 : 일본 입법주재관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9.

<그림 8> 일본 중의원 경무부 조직 및 인원 현황



자료 : 일본 입법주재관 업무보고 자료, 2009, 재구성.

의장은 당해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 사무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의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의원이 있을 시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부적당한 언행을 철회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의원이 이러한 지시를 불이행할 시 의장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의원의 발언을 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중할 때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지휘에 따라 의원 내부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은 비밀회의를 연다는 의결이 있거나 방청석이 소란스러워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때 또는 방청석에서 의원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는 경우 경위로 하여금 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의원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현행범이 있을 시 국회 경위 및 경찰은 즉각적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의장의 명령을 청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원 내에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내각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경찰을 파견하여야 한다.

## 2. 영미법계 국가의 의회 경호·경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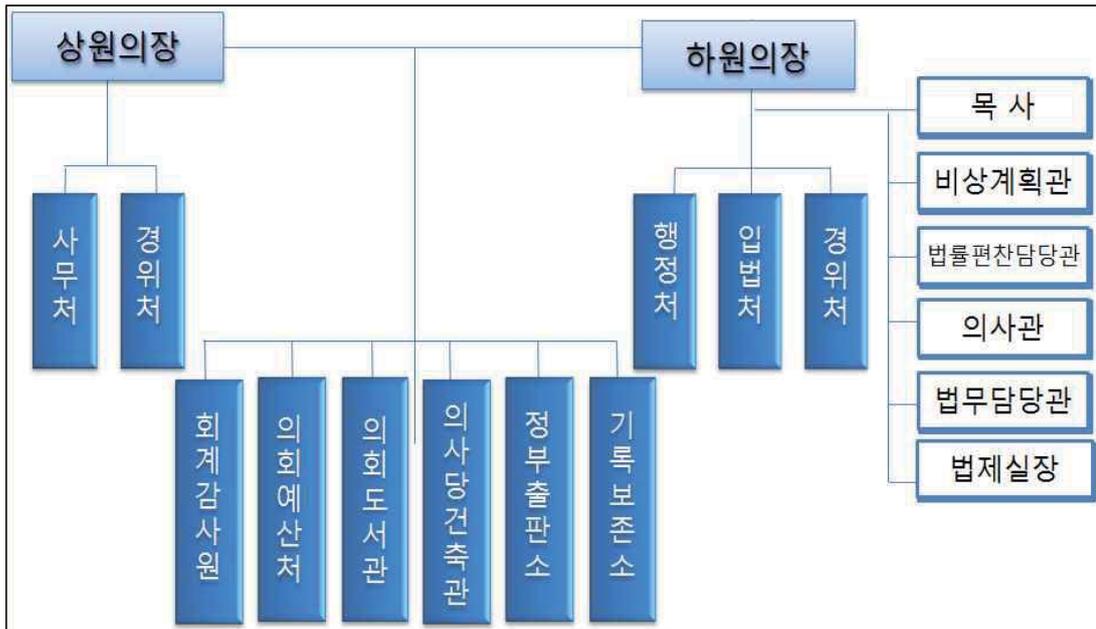
### 1) 미 국

#### (1) 일반적 사항

미국의 국회지원 조직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국회 행정 및 회의 지원을 위하여 상원과 하원에 각각 사무처(하원은 입법처와 행정처로 세분함), 경위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입법 및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하원 법제실(Legislative Counsel),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원(GAO) 등을 두고 있다.

<그림 9> 미국 양원 국회지원 조직 총괄도



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경호·방호업무편람』, 2012, 39면 재구성.

양원 본회의에서는 국회 경호·경비를 위하여 의장 직속기관으로 된 경위실장(The Office of the Sergeant at Arms)과 경위실장 아래의 회의실관리관(Doorkeeper)<sup>101)</sup>을 두어 국회의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sup>102)</sup>

국회에서는 경위 이외에 의회경찰을 두며, 상·하원의 경위실장이 공동으로 의회경찰대장(Chief of Police)과 부책임자를 선출하며 선발된 상·하원의 경위실장이 경찰관들을 공평한 비율로 선발한다.

101) 회의실관리관은 본회의장의 불가침특권에 관한 규칙을 엄정하게 집행한다. 회의실관리관은 본회의 개회 중 본회의장 상단부분에의 출입을 금하고 매일 본회의 개의 시간 15분 전에 본회의장출입특권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회의장 내에 잔류하지 않도록 정리하며, 산회 10분 후에도 그러한 정리를 행하는 책임을 진다.

102) 오병일, 앞의 논문, 50~51면.

의회경찰의 주요 부서로는 의전대, 순찰·기동대응과, 폭발물탐지견부서, 범죄현장조사반, 긴급 상황억제 대응팀, 요인경호과 등이 있다. 의회경찰의 업무는 국회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감시, 조사와 국회관할부지 내의 경비와 교통을 담당하며,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미 연방법 제2장 제29조).

<표 12> 미국 의회경위처 운영개요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규모는 상원 경위처 960여명, 하원 경위처 150여명, 의회 경찰 1,700여명 근무</li> <li>· 기관장인 경위실장은 본회의에서 선출</li> <li>· 경위, 민간 고용인, 의회경찰</li> </ul>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필기시험, 신원조회,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 검사</li> </ul>
업 무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위-국회구역 안 (경위처: 국회관련 전반적인 경호 및 보안업무 담당)</li> <li>· 의회경찰(집행)-본회의·위원회회의장 포함 국회 관할구역 보안업무</li> </ul>

자료 : 미국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서 재정리, 2009.

## (2) 상원 경호체계

상원 경위실장은 다수당에 의해 본회의에서 임명된 자로 법률 최고 집행자이자 각종 의전 책임자, 그리고 행정지원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동안 경위장의 상징인 직장(Mace)을 휴대하고 그 보수가 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상원 경위처의 주요 업무로는 상원 본회의장 질서유지 및 출입 등의 경호 및 보안업무 및 상원의 의전 및 행사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 상원 활동 및 상원의원의 모든 일반 행정적 업무를 지원한다.

### (3) 하원 경호체계

하원 경위실장은 보안업무 총책임자로서 의회경찰대(Capitol Police), 의원회관경비대(House Office Building Police), 출납실(Cashier), 안내소(Guide)를 지휘·감독한다. 의회경찰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1967년까지는 공공건물국장(Commissioner of Public Buildings)이 의회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동년도에 상·하원의 경위장(Sergeants at Arms of the House and Senate)에게로 인계된다.

하원 경위실장은 양원 합동회의나 대통령 취임식, 의원장례식과 같은 행사를 관장하며, 하원 권위의 상징물인 직장(Mace)을 보관한다. 또한 의사당, 의원회관 등과 같은 국회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원 안전의 위협요인 및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하원 경위실장은 미국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의 안전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으며 의원과 직원의 신분증을 발급 및 의사당 구내의 안녕 및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고 매 짝수년도에 의회경찰위원회(U.S. Capitol Police Board)<sup>103)</sup>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 2) 영 국<sup>104)</sup>

### (1) 일반적 사항

영국 의회는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하원(House of Commons)과 세습적 지위 또는 국왕의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상원(House of Lords)의 양원제이다.

---

103) 상·하원의 의회경찰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의 제정과 지시 및 근무배치 등 계획을 담당한다.

104) 오병일, 앞의 논문, 57~60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영국 하원의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 중에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다른 의원의 의견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한 의원에게 발언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원의장은 질서유지권과 하원의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제도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회의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의원에게는 당일에 한해 남은 회의동안 회의장 밖으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sup>105)</sup>

의원이 의장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하원규칙의 위반이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여 경고할 수 있으며, 심각한 소란행위 및 무질서가 발생할 경우 하원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 없이 산회를 선포하거나 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원의장에 비해, 상원의장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상원의 행동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는 상원의 구성원이 귀족으로 구성되어 관행과 전통 및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 (2) 경호·경비 체제

영국은 의장에게 의회경찰권이라는 일반적인 권한은 없으며 국회의 기본적인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법규정이 있다.<sup>106)</sup> 조직구조는 의장 산하에 경위장이 책임자로 있는 경위국이 있고 그 밑에 청사관리과,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관리과, 경호과가 있다.

105) 명령의 집행은 「하원의사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경위장(Sergeant at Arms)이 수행한다.

106) 국회는 내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이 배제된다. 실제로 권리장전은 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법원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국회규칙과 선례를 통해 내부절차와 관행이 성립되어 왔다.

<그림 10> 영국 하원 사무처 조직



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경호 · 방호업무편람』, 2012, 47면 재구성.<sup>107)</sup>

국회의 경호 · 경비업무는 의장의 감독 하에 경위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위장의 지위는 국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닌 군주가 임명하므로 개회 중에는 의장을 보좌하지만 폐회 중에는 군주에게 속함. 경위장은 영국 왕실의 의전관에 그 유래를 두고 있으며, 지금도 의전적인 업무의 비중이 크다.

의회경호체계조직은 경찰과 경위로 구성되어 외곽과 청사는 경찰이, 회의장 내부는 경위가 담당하고 있다. 외곽과 청사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은 런던경시청 소속으로 3년을 주기로 의회와 파견계약을 체결한다.<sup>108)</sup> 9.11테러 이후로는 경호 · 경비의 강화를 위해 무장 근무를 하고 있다.

107) 오병일, “한국 국회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9면 재인용.

108) 파견 경찰관 인원은 250여 명이고, 파견 후에는 의회에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표 13> 영국 하원의 경호조직 및 업무범위

조 직	- 경찰과 경위로 구성되어있으며 외곽과 청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회의장 내부는 경위가 담당.
업 무 범 위	- 경위-회의장 - 방호원-건물 - 경찰-의회구역 밖

자료 : 오병일, “한국 국회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9면 재정리.

## 제 4 장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 개선방안

### 제 1 절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 국회경비대 개편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기본적인 민주주의 구성 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상호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경호·경비를 위해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경호·경비업무 체계는 제1선을 국회 경위직원, 제2선을 방호직원, 제3선을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는 중첩경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울타리에서 회의장건물 앞까지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직할대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한 밖에 있어, 국회 경호·경비업무의 유기적 결합과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기습적인 시위와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경비 부서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요인암살 및 테러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일사불란한 명령하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sup>109)</sup>

이외에,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전·의경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의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경비대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현재의 국회경비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sup>110)</sup>

109) 김태연, 앞의 논문, 106면.

110) 김태연, 앞의 논문, 106면.

이 절에서는 먼저 전·의경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후, 국회경비대 개편방안으로서 크게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존속 시 지휘권을 인수하는 방안과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가 폐지된 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각 방안의 장·단점 및 도입 시 필요한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2. 전·의경<sup>111)</sup>제도의 변화 방향

현역 군입대 자원의 부족현상으로 2008년 이후 전·의경의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경찰인력의 부족심화로 2011년 국방부와의 재협의를 통하여, 2012년에서 2015년 간 의경의 숫자를 약 25,900여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2012년부터 전경을 폐지하고 의경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아울러 2016년 이후 배정계획은 2015년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sup>112)</sup>

현재 전경은 더이상 충원이 되지 않고 폐지되었으며, 의경의 숫자 또한 계속 감소하는 상황으로, 향후 의경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

111) 의경은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줄임말이고, 전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의 줄임말이다.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의경 또한 '전투경찰순경'에 해당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투경찰순경(전경)에 해당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 제2항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무경찰순경(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규상 의경과 전경 모두를 '전경'이라 호칭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의경'이라 부르고 '작전전투경찰순경'을 '전경'이라 부른다.

112) 2007년 2월에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08년부터 전·의경(46,916명)을 매년 20%씩 감축하여 2013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축소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대체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3월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재조정하여 해경·법무는 당초계획을 적용하되, 경찰분야는 조정안을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정안은 경찰에 조정기간 동안 매년 12,480명의 현역자원을 배정하고, 보충역을 2,302명으로 유지하며, 전·의경 감축인원의 30%를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높다.<sup>113)</sup> 경찰 내부자료<sup>114)</sup>에 의하면, 경찰청은 국방부의 2021년 이후 전·의경제도의 전면폐지 입장에 대비하여 경찰관 중심의 경비체제를 갖추려 시도하고 있다.

### 3. 국회경비대 존속시 지휘권 인수방안

#### 1) 국회경비대장 파견방안

청와대 경호·경비와 관련하여, 제1선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제2선의 경우 행사장 내 경호는 22경찰경호대, 청와대 출입문과 경내 모든 건물은 101경비단(경찰)이 담당하며, 제3선은 202경비단(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찰관리관(경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4(파견근무)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파견근무)에 근거하여 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되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대인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체계이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으로도 대통령 경호실 파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가적으로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리관의 법적 신분의 경우,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되고, 동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규정, 즉 “실장은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

---

113) 전·의경제도와 관련하여, 2011.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14) 2008년에는 당초 전·의경 4,692명을 감축하여 42,224명이 되어야 하나, '08년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원 42,224명을 그 당시 현원 규모인 37,440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결원으로 운영 중이던 4,784명은 경찰관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감축.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표 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신분 및 지휘·감독권 규정

제2조제3호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 ‘소속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동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행하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sup>115)</sup>

경호실에 파견되어 경호실장의 지휘를 받는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리관이 경호실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기관’인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을 지휘하는 체계는 국회경비에 관한 지휘권인수에 있어서 중요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국회경비대장 파견은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2조(파견근무)에 의하여 가능하다.

115)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법해석에 대한 이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5조처럼 「국회사무처법」에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따라서 지휘권 문제는 「국회사무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표 15>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b>제 3 조(공무원의 임용)</b>                      ① · ② · ③ · ④ (생략)                      &lt;신 설&gt;</p>	<p><b>제 3 조(공무원의 임용)</b>                      ① · ②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사무총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b>제 4 조(사무총장)</b>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 4 조(사무총장)</b> ① -----                      -----                      -----  <u>여기서 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u></p>

개정안에 의하면, 사무총장이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국회경비대장을 지휘·감독하므로 국회경비대장은 사무총장의 직속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무총장의 감독권한을 국회사무처 소속의 경호기획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국회경비대 전체 파견방안

국회경비대는 경찰관과 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하여 파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의경을 타 기관에 파견한 사례는 없다.

의경의 신분과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인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4조에 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파견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4”가 의경에게도 적용가능하고 따라서 법해석상 의경도 타 국가기관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경비대 전체 파견 시 이에 대한 지휘통솔권 행사를 위해서는, 앞서 국회경비대장 단독 파견방안에서 언급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휘명령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또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경비대 전체(구성원)를 지휘·감독하므로 국회경비대는 당연히 사무총장의 직속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내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회사무처 소속의 경호기획관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시 및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경비대 전체를 파견 받는 방안의 경우, 파견 시 각종 출장비 및 활동 수당 등을 파견 받는 기관 즉, 국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회경비대장만을 파견 받는 방안에 비해 예산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산문제를 고려한다면 국회경비대장만을 파견 받는 것도 좋으나, 보다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국회경비대 전체를 파견 받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찰내부 훈령 제정을 통한 지휘 및 감독권 확보방안

지난 2002년 경찰관리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는 독립적인 경찰경호부대였으며, 101경비단장, 22경찰경호대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경호실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였다.<sup>116)</sup>

위 지휘·감독권의 근거는 서울지방경찰청 훈령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sup>117)</sup> 즉 서울경찰청 훈령이 경호실장 지휘 및 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은 경찰청에 두고 지휘·감독권만 경호실장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sup>118)</sup>

국회경비대의 사무분장 또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21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규정과 유사하게 동 21조에 지휘 및 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다면, 현재 이원화된 국회의 경호·경비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지휘권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16) 이처럼 별개로 운영된 경찰경호부대를 (202경비단을 포함)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관리관’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1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9조(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

① 101 경비단 및 22 경찰경호대의 사무분장은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② 101 경비단 및 22 경찰경호대는 대통령실의 경호실장이 지휘·감독한다.

118) 지금도 동 훈령은 존재한다.

<표 16>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이다.

<표16>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개정안

현 행	개정안
<p><b>제21조(국회경비대)</b> 국회경비대는 본부, 105전투경찰중대와 의장공관대를 두고, 전투경찰중대장은 경감으로, 의장공관대장은 경위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lt;신설&gt;</p>	<p><b>제21조(국회경비대)</b> ① 국회경비대는 본부, 105전투경찰중대와 의장공관대를 두고, 전투경찰중대장은 경감으로, 의장공관대장은 경위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② <u>국회경비대는 국회사무총장(경호기획관)이 지휘·감독한다.</u></p>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휘·감독권만 전환되고, 인사 및 예산은 경찰청에 권한이 있으므로 비용부담이 없으며, 국회경비대장을 파견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법률 근거규정도 필요치 않다.

즉 경찰과 협의하여 경찰 내부훈령만 제정하게 한다면,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대체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의경의 정원은 계속 축소가 예상되며, 또 의경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국회경비대는 의경 중심으로 의경인력이 축소되거나 의경제도가 폐지된다면 국회경비대 존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가능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개편 후 지휘권 인수 방안

국회는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국회에서의 범죄발생 및 테러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경비대의 경호·경비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연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가 이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의경은 경찰의 극히 제한적인 사무보조 인력이므로 중요한 경찰활동은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경제도가 없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를 재편하여, 이를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경찰관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현재 총경급인 국회경비대장의 직위를 경무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성도 존재하며, 지휘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지휘권 인수 방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회경비대장을 파견 받는 방법<sup>119)</sup>, 국회경비대 전체를 파견 받는 방법 또는 경찰내부의 훈령을 신설하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방호직원 증원 방안<sup>120)</sup>

현행 국회경비대가 없어지는 경우를 대비, 현재 제2선에서 청사방호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원을 증원하고 이를 전문화하여, 제3선을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제2선과 제3선 업무를 국회소속의 방호직렬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경호·경비 체제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9) 이 경우 지휘통솔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120) 제2선 및 제3선 경호·경비 통합.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38면 참조.

다만, 방호직원이 현재 국회경비대 소속의 경찰관이 행하고 있는 질서유지, 검문검색, 교통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제도와 관련해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없다.

조직법적인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규칙으로도 충분하지만, 반면 검문검색, 질서유지 등과 같은 작용법적 권한행사는 대국민적 기속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작용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원경찰법」 제3조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규정과 같이 방호직원에게 특화된 근거규정을 새로이 만드는 방법이 있다.

<표 17> 작용법적 근거규정

「청원경찰법」 (1안)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2안)
<p><b>제 3 조(청원경찰의 직무)</b>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p>	<p><b>제 5 조(경호구역의 지정 등)</b> ③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p> <p><b>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b>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작용법적 권한<sup>121)</sup>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sup>122)</sup>상의 권한보다 폭이 더 넓으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현재 국회의 경호·경비 환경을 고려할 때,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과 같이) 개별조항으로 권한을 주는 것보다 청원경찰법과 같이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만드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법」과 같은 준용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 결국 방호직원이 제2선과 3선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권한규정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회경비에 특화된 새로운 경찰제도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2선과 3선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미국의 의회경찰(US Capitol Police)제도와 유사하다. 소위 제2선과 3선을 통합하여 사법경찰권 및 행정경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이른바, 국회경찰제도는 후술하기로 한다.

### 3) 청원경찰 활용방안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민간인 신분의 경찰을 의미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근거,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국회경비대를 청원경찰로 대신하는 경우 따로 작용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sup>123)</sup>

121)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사실의 확인 등 여러 가지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음.

122)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2015, 530면.

123) 오병일, 앞의 논문, 139면.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제2조), 가. 범죄의 예방·진압, 나.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다.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라.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마.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행할 수 있고, 이러한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권한으로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 등이 있어 청원경찰은 상당히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 경호·경비의 경우 현재 3선 외곽경비는 청원경찰과 함께 9급 상당(별정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원보안관리대’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바, 과거나 현재 모두 청원경찰을 제3선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위 작용법적 근거규정에 기인한 것이다(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과 동일한 경비경찰권 행사).

참고로, 법원보안관리대 또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규정<sup>124)</sup>에 의거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24)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흥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8> 법원의 경호·경비 체제

구 분	과 거	현 재
외곽경비(제3선)	청원경찰	청원경찰 (+법원보안관리대)
청사방호(제2선)	방호직원	방호직원 (+법원보안관리대)
법정경호(제1선)	법정경위	법정경위 (+법원보안관리대)

그러나 청원경찰을 배치받기 위해서는 「청원경찰법」에 의거, 먼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하고 임용은 청원주가 하되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즉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정에서 배치자의 적절성 여부, 청원주의 합법성 여부 등 모든 것이 경찰기관에서 심사되어 지고 임용 이후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경우 입법부 사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표 19> 「청원경찰법」과 경찰의 관리감독

제4조제1항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 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원경찰을 제3선에 배치한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권한을 경비구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

원경찰법」이 제정된 1960년대는 국가산업시설에 대한 불순분자들의 침투 위협이 상존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무기휴대가 가능한 훈련된 경비원이 대량으로 필요한 시대였고, 한정된 경찰력으로 늘어나는 경비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청원경찰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은 단순방호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등, 국회와 법원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호원 제도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많은 국가시설에서 오히려 청원경찰을 방호직렬 공무원인 방호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청원경찰제도를 새로이 운용하는 것은 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다.

#### 4) 특수경비원 활용방안

특수경비원이란 특수경비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항 마목)<sup>125)</sup>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법」에 의거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을 의미한다.

특수경비원제도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원경찰이 맡고 있는 공항이나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민간경비업체<sup>126)</sup>에도 외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생하였다.

---

125) 「경비업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6) 특수경비업무를 행하는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는 「경비업법」 제14조<sup>127)</sup>에 의거, 테러나 위험사태의 발생 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무기 등을 사용하여 대적할 수 있는 방어기능만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국회방호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에서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업법」 제2조 제1항 마목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중요시설로,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특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비원의 문제점으로는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입법부 사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비업법」 제13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 교육 시 경찰관이 입회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1항은 경비구역 내에서 직무수행 시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7)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동법 제15조 제1항은 특수경비원에게(관할 경찰서장에게) 직무상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경비업법」은 국가경찰에게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감독권한, 직무감독권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을 활용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인 경찰의 감독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표 20>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업 관련 경찰의 관리감독

제13조 제3항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6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들의 신분에 대한 인식부족이 특수경비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현재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항 등에서는 특수경비원이 단순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특수경비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자주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의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sup>128)</sup>

128)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총 380명 중 1년 이하의 신규채용자가 20% 정도로서 많은 인원이 직장을 쉽게 이직하는 경향을 보이고, 근무자 절반이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특수경비용역(특수경비원)을 전면 도입<sup>129)</sup>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특수경비용역 자체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는 점이다<sup>130)</sup>.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호·경비 서비스가 필요한 국회에서, ‘값싼 경호서비스라는 인식이 팽배한 특수경비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5) 국회경찰 창설 방안(미국식 의회경찰)

방호직공무원 증원 방안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방호직공무원을 증원하여 제2선과 제3선의 경호·경비 체제를 일원화하고(제1선은 경위담당), 아울러 「청원경찰법」과 같은 준용규정을 만든다면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호직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없으므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 등에 대한 테러 및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회 내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법집행의 실질적 담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권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

하였으며, 근무자 대부분이 전문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신동화,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보안 체계강화를 위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4~55면.)

129) 국회 방호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특수경비 인력 37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음[연평균 1인기준 인건비 : 방호직공무원(9급 3호봉 기준, 약 3,500만원), 특수경비용역(약 2,000만원)자료: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내부자료, 2015.

130)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8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원경찰 평균임금은 2천 5백만원으로 민간경비원 평균임금인 1천5백만원보다 약 1천만원이 높았다. 1인당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경비원 제도는 낮은 처우 및 전문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원경찰체도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권을 갖는 전문적 방호요원 제도, 다시 말해서 미국 의회경찰과 유사한 소위, ‘국회경찰’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미국의 의회경찰(US Capitol Police)은 1828년 의사당 원형홀(Rotunda)에서 발생한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아들 습격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미국의 특별경찰체도로써, 상원경호실(Senate Sergeant at Arms), 하원경호실(House Sergeant at Arms), 의사당건축처(US Architect of the Capitol)의 수장으로 구성된 美 의회경찰위원회(US Capitol Police Board)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131)</sup>

<그림 11> 미국 의회 경호·경비 체계



자료 : 미국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자료, 2009.

131) 이강봉, 앞의 논문, 139면.

미 의회 경찰은 약 1,700여명이 근무하며, 경찰대장(Captain)과 부대장(Lieutenants)은 상하원 경호실장이 공동으로 선출하고, 근무 시 항상 경찰복장을 착용하면서 무기를 소지한다.

상하원 경호실의 경호 및 보안업무 지원, 의사당·의원회관·도서관 통제,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자에 대한 수사권<sup>132)</sup>까지 가지고 있다<sup>133)</sup>.

경위처가 의회관련 경호 및 보안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의회 경찰은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함. 따라서 경위처가 상급부서의 개념이며, 의회경찰은 집행부서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르게 본회의장 내에서 의원의 소란 또는 질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회자는 경위에게 질서위반행위를 중단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래도 계속되는 경우 본회의장 내에 의회경찰을 불러 해당 의원을 밖으로 퇴장시킬 수도 있다.<sup>134)</sup>

이러한 미국식 의회경찰제도와 유사하게 집행부서 개념의 한국형 ‘국회경찰’제도를 만들어 (제한된) 사법권까지 가지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정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美 의회경찰과 같이 본회의장 내에 진출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업무는 국회 경위가 전담하고) 제2선과 제3선의 경호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가진 한국식 ‘국회경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한 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제도의 근거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

132) 의회 관할구역 내에서 경범죄나 중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미연방법 제2장 29조), 의회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항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미연방법 제2장 제29조). ; 이강봉, 앞의 논문, 139면 각주172.

133) 이강봉, 앞의 논문, 47면.

134)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 의회경찰이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을 퇴장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한 특별법」 제108조<sup>135)</sup>와 같은 근거조항이 필요하다.<sup>136)</sup> 제주자치경찰은 안전·교통·경비에 관한 기본업무 및 제한된 수사업무까지 관장할 수 있다.

## 제 2 절 국회 경호 운영효율성 향상 방안

### 1. 출입통제방법의 개선

#### 1) 필요성

국회 건물 구조상 출입문과 국회 청사 내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 많은데 비해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이 부족하며, 인원의 통제를 장비보다는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보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통제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

13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36) 이강봉, 앞의 논문, 140면 각주173.

## 2) 주요국 국회의 출입통제<sup>137)</sup>

### (1) 미 국

의사당과 회의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X-ray투시기 및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한다. 의사당 경내로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1.25톤 이상의 트럭이 국회 주요 구역을 통과할 때는 수차레에 걸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의사당으로 배달되는 모든 화물은 X-ray투시기 검사와 경비견 수색을 받은 후 봉인을 하고 다시 적재하여 미리 정해진 경로를 통하여 배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 (2) 영 국

의원전용 출입구, 직원 출입구, 방문객 출입구로 구분하여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X-ray투시기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방문객이 의원 전용장소와 복도를 출입할 때, 퇴거명령에 불복하였을 때는 구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3) 프랑스

모든 사람들은 외곽문에서부터 신분과 목적지를 확인한 후 출입할 수 있고, 의원과 직원들이 출입하는 주출입구와 방문객 등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일반 방문객은 X-ray 투시기와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문을 통과하여 안내데스크에서 방문하는 층과 사무실이 표시된 방문증을 신분증과 교환한 후 패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

137) 한국체육대학교 「국회경호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관계법규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0, 참조.

회의참석자도 안전검사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하는 층과 회의장이 표시된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

#### (4) 독 일

의사당 외곽 출입구에서부터 신분확인 후 출입할 수 있으며, 의사당 출입구는 의원전용출입구, 직원전용출입구, 일반 방문객 출입구로 구분되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 방문객은 수 일전에 방문신청을 하면 안전과에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고 방문 시 명단을 확인한 후 X-ray투시기와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손으로 보안검색을 거친 후 출입할 수 있다.

청사 내에서 일반 방문객이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이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객이 다니는 모든 복도에 전자제어문이 설치되어 있어 허가받지 않은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 (5) 일 본

수십 종류의 기장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들의 기장 패용을 의무화하였는데, 각종 기장에는 출입자의 방문목적에 합당한 통행구역을 두어 불필요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뱃지만으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타 직원 및 일반 방문객은 예외 없이 기장과 뱃지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일반 방문객의 소지품은 임시보관함에 보관토록 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객에 대하여는 각각의 방청권을 통행증으로 대용하고 회의장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며, 필요 시 신체검색의 절차를 거친다.

## 제 3 절 국회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1.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

#### 1) 필요성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회에 대한 점거시위와 테러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의안심의 방해 및 의사당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sup>138)</sup>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화된 경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회는 경호업무가 과 단위에서 제19대 국회 개원<sup>139)</sup>에 맞춰 국(경호기획관) 단위로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그 위상 및 지휘체계가 증가하는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sup>140)</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 국회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용어는 달리하나 ‘경위장(Sergeant-at-arms)’과 ‘의회경호실’을 두어 경호업무의 전문화 및 경호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어있다.<sup>141)</sup>

그러므로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신변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의 안전과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확고한 국회경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국회경호처법」 제정과 함께 직제개정을 통해 가칭 ‘국회경호처’을 설치하고 국회경호처의 수장에게 세계 주요국 의회와 같은 ‘경위장(Sergeant-at-arms)’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sup>142)</sup>

---

138) 오병일, 앞의 논문, 65면.

139) 2012년5월30일.

140) 김태연, 앞의 논문, 103면.

141) 오병일, 앞의 논문, 65면. ; 김태연, 앞의 논문, 103면.

142) 김태연, 앞의 논문, 103~104면.

## 2) 경위장(Sergeant-at-arms)의 의의와 역할

1884년 영국의 대법관 Coleridge는 경위장(Sergeant-at-arms)에 대하여 “의회는 동일한 권능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스스로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자에 의해 기능해야만 한다. 경위장(Sergeant-at-arms)은 법이며, 의회의 의사진행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의 관리자로서 인정받는다.”라고 말하였다.

미국 의회의 경우 경위장은 의회의 개회기간 중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의 명령을 수시 집행하며, 의장이 지시하거나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명령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상·하원의 경호·경비부서 책임자를 지칭한다.<sup>143)</sup>

미국 의회의 상·하원 경위장은 상·하원의 결의나 명령 등으로 임명되고, 의회의 규율집행관으로서 본회의장내의 질서와 규칙을 유지하며, 의사당과 의사당 주변을 순찰할 책임을 진다.<sup>144)</sup>

美 하원 경위장은 의회경찰대(Capitol Police), 출납실(Cashier), 의원회관경비대(House Office Building Police) 및 안내소(Guide)를 지휘·감독한다. 美 상원 경위장은 상원의 행정관(Executive Officer)으로서 본회의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방청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실관리관(Doorkeepers), 의회경찰대(Capitol Police) 및 경위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sup>145)</sup>

## 3) 가칭 ‘국회경호처’ 설치 방안

### (1) 주요내용

국회경호처는 경호·경비 조직의 위상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한다. 국회경비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독립기관인 국회

---

143) 김태연, 앞의 논문, 104면.

144) 김태연, 앞의 논문, 10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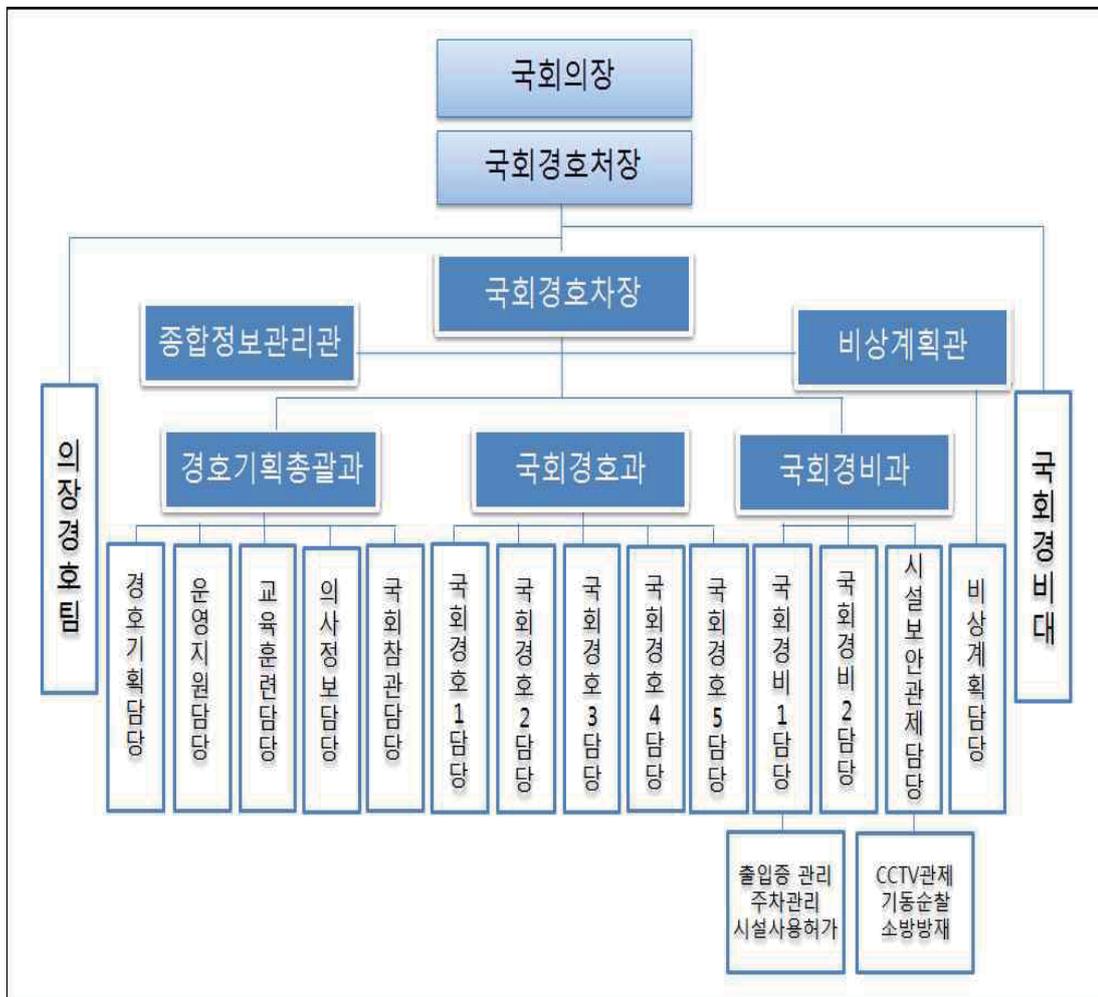
145) 김태연, 앞의 논문, 104면.

경호처장하에 두어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명령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위기발생시 긴급조치능력을 강화한다.

종합정보관리실을 운영하여 의회경호·경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속 비상기획업무를 국회경호처로 통합한다.<sup>146)</sup>

(2) 소관업무

<그림 12> 가칭 ‘국회경호처’ 조직 구상도(안)



146) 김태연, 앞의 논문, 104면.

- 국회경호처장
  - 국회경호·경비 업무 총괄
  - 국회경호처 및 국회경비대 지휘·감독
- 경호차장
  - 국회경호·경비 지휘·감독
  - 종합정보관리 총괄
  - 비상대비 계획 총괄
- 종합정보관리관
  - 종합정보관리실(국회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국회 경호·경비 업무의 종합조정
  -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불법행위자의 수사 및 신병관리 등 법무행정
- 비상계획관
  -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및 통제
  -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연습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 청사방화관리
- 경호기획총괄과장
  - 국회경호·경비업무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회 내 주요행사시 경호 및 의전수행
  - 조직 및 정원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 및 결산
  - 임용, 복무, 상벌, 연금 등 인사관리
  - 물품관리 조달 및 접수

- 회의관련 의사정보수집 및 조사·분석
-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 경호과장

- 경호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본회의 및 위원회 질서유지
- 본회의장 안전관리
-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 증인에 대한 구인 및 보호

○ 경비과장

- 국회 청사경비 및 방호
- CCTV관제실 운영
- 시설물 사용허가
- 소방방재
- 각종 출입증 발급 및 관리
- 주차증 발급 및 경내 주차관리

(3)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회경호처(이하 “처장”이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변보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말한다.

2. “시설경비”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호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말한다.
3. “질서유지”라 함은 국회 본회의, 위원회회의 및 국정감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내·경고·제지·신체검색 등의 안전활동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국회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직무)** 경호처는 경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신변보호
2.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3. 국회의사당 및 의장공관의 시설경비
4. 국회 본회의, 위원회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질서유지

**제 5 조(처장)** ①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호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경호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공무원의 임용)** ① 처장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② 경호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조직)** ①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 ②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 경호처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을 둔다.

**제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사법경찰권)** ①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위는 제4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한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1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③ 소속공무원의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복 및 장비)** ① 경위는 근무 중 국회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경위는 경호를 위하여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수 있다.

**제13조(벌칙)** 제11조 제2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사무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8호 중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을 “청사관리”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38. 국회에 근무하며 경위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를 신설한다.

## 2. 「국회법」 및 경호·경비 관계법규 제·개정

### 1) 필요성

현재 국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국회법」 등 법률에서 직접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운영과정에서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국회법개정과 별도로 세부적인 가칭「국회경호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안과 회의장에서 질서유지 및 경호·경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147)</sup>

## 2) 가칭 「국회경호규칙」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143조와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와 국회의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경호”라 함은 국회의 존엄과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대상의 신변보호, 시설경비 및 질서유지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장 및 위원장의 경호권)** 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경호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질서유지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권을 행사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경위)**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둔다.

② 경위는 경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의장 및 부의장의 신변보호
2.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147) 오병일, 앞의 논문, 35면.

3. 국회 본회의, 위원회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질서유지

③ 경위는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안에서(의장공관, 국정감사장 및 국정조사장을 포함 한다)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방호원은 국회건물 및 의장공관의 시설경비를 위하여 국회건물 및 의장공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에서의 안전임무를 수행한다.

⑤ 경위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한다.

## 제 2 장 신변보호

**제 5 조(의장 및 부의장의 신변보호)** ① 경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한다.

② 경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무실, 공관 등의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호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한다.

**제 6 조(신변보호업무의 담당)** ① 일반직공무원인 경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호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의 경호임무를 담당한다.

② 신변보호업무는 선발경호팀과 수행경호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7 조(신변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안유지)** ① 모든 행사는 신변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식행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두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변보호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경호대상자의 동정이 일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시설경비

**제 8 조(국회건물 및 의장공관의 시설경비)** ① 방호직공무원인 방호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 은 국회건물(국회의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한다)

및 의상공관의 시설경비를 위하여 그 시설을 경계·순찰 및 방호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한다.

② 시설경비업무는 시설경호팀과 안내경호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시설경비업무의 분담)** ①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의 시설경비는 중첩하여 경호한다.

② 방호원은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의 시설경비를 위하여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에서의 경비임무를 담당한다.

③ 「국회법」제144조 제3항에 의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의 시설경비를 위하여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에서의 경계임무를 담당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통제)** ① 방호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회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를 통제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당해 행위의 중지,장해의 제거 및 퇴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금지행위)** ① 경위 및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의 조치를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회건물 또는 의상공관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국회건물 등의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국회건물 등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국회건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건물 등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국회건물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건물 등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기타 국회건물 등의 시설경비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회건물 등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제12조(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의 출입절차 등)** 국회건물 및 의상공관의 출입절차, 출입증의 발급 등 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내규로 정한다.

#### 제 4 장 질서유지

**제13조(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의 질서유지)** ① 경위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전후에 당해 회의와 관련 없는 자에 대하여 회의장 주변의 통행과 회의장 출입의 제한·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경위는 회의중 「국회법」제145조 제2항에 따른 퇴장조치에 불응하는 의원에 대하여 의장 및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본회의장의 목적 외 사용금지)** 경위는 의원이 본회의장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지체 없이 불법사용자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본회의장 출입의 제한)** 경위는 「국회법」제151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한다.

1. 의원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3. 본회의에 종사한 의사·의안·속기·경위직원
4.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회 소속 국회공무원
5. 교섭단체별로 그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본회의장 연락요원 2명
6. 본회의장 시설·장비의 정비를 위한 자
7. 그 밖에 의장이 허가한 자

**제16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① 경위는 누구든지 회의장 내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 반입을 통제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예방 및 제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단상 및 발언대 등단 등 금지위반자 퇴장)** 경위는 다음 각호의 해당위원에 대하여 의장의 명에 따라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1. 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단상(의장석을 포함한다) 또는 발언대에 등단하는 경우
2. 의원이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법」제3조에 따라 배정된 본인의 의석이 아닌 다른 의원의 의석에 착석하는 경우

**제18조(의사진행방해 금지)** 경위는 의원이 회의장 점거, 발언대 점거, 의상의 사회방해, 표결방해, 발언의 방해, 발언제지에의 불응, 소란행위, 폭력행사, 시위행위 등의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9조(방청권의 확인 및 통제)** 경위는 방청인이 입장할 때 방청권을 확인을 하며 부정발급자 등으로 확인된 자나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제20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색)** ① 경위는 흥기를 휴대한 자, 주기기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금지한다.

② 경위는 방청인에게 신체 및 휴대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회출입기자(단, 임시출입기자증 소지자는 제외한다.)
2. 안건과 관련이 있는 행정부공무원
3. 국회공무원

**제21조(방청인의 회의방해행위 등 단속)** 경위는 방청인이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부피가 큰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4. 회의장내에서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5. 회의에 방해가 되는 소리를 내거나 떠드는 행위
- 6. 휴대전화기 및 개인휴대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제22조(방청인의 퇴장)** 경위는 방청인에게 국회가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방청인을 퇴장시켜야 한다.

- ② 경위는 방청인의 회의내용에 대해 의사표시 또는 소란행위로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위반자를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에서의 방청인 퇴장)** 경위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에 따라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24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질서유지)** 경위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동규칙 제13조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호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5조(무기의 휴대 등)** ① 경위에게 지급할 무기는 권총과 소총으로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국회사무총장은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2. 국회사무총장은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5.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이 경위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1.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제품의 탄약을 우선 출납하여야 한다.

3. 경위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5.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위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5. 주벽이 심한 자 등

**제26조(복제)** ① 경위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경위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장을 착용하여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노출경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27조(무기 및 장비 등의 지급)** 국회의사무총장은 행사의 성격 및 근무의 위해환경에 따라 지급된 무기나 장비중 최적의 무기나 장비를 경위에게 휴대하도록 한다.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방안**

**1)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화된 기능이나 한정된 지역,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 분야의 범죄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수사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의장 등 요인에 대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시점에서 경호범죄의 예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질서유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호전문성을 갖춘 국회경위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2) 대통령경호실 경호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현황

대통령경호실에서는 1963년 12월 14일 특별법률 제1507호 「대통령 경호실법」과 12월 16일 각령 1679호로 동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경호실의 경호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sup>148)</sup>

현재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 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경호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sup>149)</sup>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sup>150)</sup> 제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다.

---

148)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4.28.]

149) 법무부 예규

150)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 3) 도입방안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sup>151)</sup>에서는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문에 국회 경위직 공무원을 포함시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 4. 무기휴대 및 사용권의 부여

### 1) 필요성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 경내에서 범죄와 국회의장 등 요인에 대한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유사시 요인경호 및 테러방지뿐만 아니라 범죄 진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경비요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권 부여가 필요하다.

---

151)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법률적·제도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총기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실제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총기 오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2)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의 총기휴대 및 사용권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경호실장의 명을 받아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무기를 휴대하는 경호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 ① 「형법」 제21조<sup>152)</sup> 및 제22조<sup>153)</sup>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②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

152)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53)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를 도피시키려고 경호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③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호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154)에 처벌규정을 두어 총기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 3) 도입방안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 경위직·방호직공무원에게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에 준하는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경위의 무기 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

154)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 장 결 론

국회경비대 개편방안으로 크게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제도 존속 시 지휘권 인수 방안과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 제도 존속 시 지휘권 인수 방안으로서는 첫째, 국회경비대장 파견 방안. 둘째, 국회경비대 전체 파견 방안. 셋째, 파견이 없는 경찰내부훈령 제정을 통한 지휘 및 감독권 확보 방안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국회경비대장 파견방안과 국회경비대 전체 파견방안의 경우 공히 신분에 대한 규정 및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대한 규정 신설이 새로 필요하다. 파견 시 사무총장의 직속(기관)이 되어야 하고 다만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러한 지휘·감독권한을 국회내부규칙 제정을 통하여 경호기획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sup>155)</sup>

경찰내부훈령을 통한 지휘 및 감독권 확보방안은 과거 경호실(처)장이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sup>156)</sup>를 지휘·감독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인사 및 예산은 경찰청에 두고 지휘·감독권만 경호실장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가장 신속히 지휘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가 존속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방안으로는 1.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개편 후 지휘권 인수방안, 2. 방호직원 증원방안, 3. 청원경찰 활용방안, 4. 특수경비원 활용방안, 5. 미국식 의회경찰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되었다.

155) 김태연, 앞의 논문, 106면.

15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0조(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 ①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의 사무분장은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②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지휘·감독한다. <2008. 9. 18 개정>  
2015. 10. 1. 훈령 제299호 제88차 개정.

현행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를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로 개편한 후 지휘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직업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sup>157)</sup>

다만 지휘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국회경비대장을 파견 받는 방안과 국회경비대 전체 파견방안<sup>158)</sup>, 또는 경찰내부의 훈령을 신설하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국회방호직원 증원방안은 제2선과 3선의 경호·경비 체제를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호직원이 현재 국회경비대 경찰관이 행하고 있는 질서유지, 검문·검색, 교통관리 등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sup>159)</sup>

작용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 「청원경찰법」 제3조<sup>160)</sup>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규정을 만드는 방법과 권한규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방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유사하게)이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가 바람직하다.

청원경찰 활용방안의 장점은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손쉽게 고용할 수 있고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을 경비구역 내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sup>161)</sup> 청원경찰 배치, 임용승인과정, 직무수행 등에서 경찰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157) 김태연, 앞의 논문, 106면.

158) 이 경우 지휘권에 관한 근거법령 필요.

159) 이강봉, 앞의 논문, 138면.

160) 제 3 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0.2.4.]

161) 김태연, 앞의 논문, 106면.

국회는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특수경비용역의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청원경찰의 문제점과 유사하게 「경비업법」은 국가경찰에게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감독권한, 직무감독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수경비용역의 도입 시 입법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sup>162)</sup>

아울러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4조<sup>163)</sup>에 의거 무기 사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원경찰과 비교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다.<sup>164)</sup>

마지막 방안은 행정경찰권과 사법경찰권을 모두 갖고 있는 미국식 의회경찰제도와 유사한 ‘국회경찰’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제주자치경찰과 유사하다.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기습적인 시위 및 불법점거행위 등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행정경찰권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수사권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sup>165)</sup> 다만, 국회경찰은 제3선을 담당하고

162) 김태연, 앞의 논문, 106~107면.

163)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4) 김태연, 앞의 논문, 107면.

165) 김태연, 앞의 논문, 107면.

제1선은 경위가 담당, 제2선은 방호직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국회경호제도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 중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거 대통령경호실이 경찰부대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방법, 즉 경찰내부훈령 제정을 통한 지휘권 확보방안이다.

대통령경호실의 선례가 존재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2조(국회경비대)에, “국회경비대는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만 신설하면 충분하므로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sup>166)</sup>.

둘째, 중기적 개편방안으로는 의경제도 폐지에 대비하고 또한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경 중심의 국회경비대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호·경비부대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휘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방법에서 제시되었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2조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166) 제22조(국회경비대) 국회경비대는 본부, 105전투경찰중대와 의장공관대를 두고, 전투경찰중대장은 경감으로, 의장공관대장은 경위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 부
  - 가. 경무, 인사, 상훈,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일반장비 수급 및 통신·차량·무기 관리 유지
  - 다. 경리 및 시설관리
  - 라. 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마. 국회청사 등 외곽 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바.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 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에 관한 사항
  - 아. 불순분자의 잠입방지 및 검거 등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의장공관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장공관대
  - 가. 국회의장 공관경비 및 출입자 통제
  - 나. 국회의장 경호

셋째, 범죄 및 테러 등 위협요소가 급증하는 국회의 경호위해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기대책으로는 행정경찰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미국식 의회경찰제도, 즉 한국형 ‘국회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제2선과 3선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여 경호조직의 원칙 중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 경호기관 단위작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sup>167)</sup>

---

167) 김태연, 앞의 논문, 107면.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경찰청, 『경비국 내부자료』, 서울: 경찰청, 2012.
- 국회사무처, 『국회경호·방호업무편람』, 서울: 국회, 2012.
- \_\_\_\_\_, 『경호기획관실 내부자료』, 2013.
- \_\_\_\_\_, 『국회법해설』, 서울: 대동인쇄소, 2012.
- \_\_\_\_\_, 『미국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자료』, 2009.
- \_\_\_\_\_, 『영미 의사규칙』, 서울: 세븐스가든, 2014.
- \_\_\_\_\_, 『일본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자료』, 2009.
- \_\_\_\_\_, 『프랑스 입법주재관 업무보고자료』, 2009.
- 국회운영연구회, “의장권한에 관한연구”, 연구논집 제8집, 1972.
-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2015.
- 김태연,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동화,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보안 체계강화를 위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안병옥, 『최신 국회법』, 서울: 초이스디자인, 2012.
- 오병일,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병일, “한국 국회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참고문헌

오병일·이주락·김태연, “국회 경호·경비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 행정논집』, 9(1): 187-205, 2012.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전진영,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제20호, 2009.

최민규, “대한민국 법원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국회담장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0.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회경호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관계법규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0.

## II. 웹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5.9.검색

국회경비대 홈페이지, <http://www.smpa.go.kr/nasc/>, 2015.9.11.검색.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http://www.pss.go.kr/>, 2015.9.5.검색.

독일연방하원의회 홈페이지 <http://www.bundestag.de/>, 2015.10.5.검색.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2015.9.14.검색.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 2015.10.26.검색.

테러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www.tiic.go.kr](http://www.tiic.go.kr), 언론보도 종합 참고.

프랑스국민의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  
2015.10.5.검색.